

第222回國會
(臨時會)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1年6月15日(金)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현황보고
 - 가. 노동부소관

審査된案件

- 1. 현황보고
 - 가. 노동부소관 1

(10시28분 개의)

○委員長 劉容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하면서 집중적으로 교섭을 지도한 결과 파업참여
사업장 수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1. 현황보고

가. 노동부소관

○委員長 劉容泰 의사일정 제1항 노동부소관 현
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우리 부는 지난 2월에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착
실히 추진해 왔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실업률 3%대를 유지토록
노력하면서 지식 정보시대에 걸맞는 인력양성, 산
업재해 감소,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향상 등 우리
부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존경하는 劉容泰 위원장님
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췌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
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222회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
동부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
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문제는 연초부터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
고 또 우리 부도 열심히 노력한 결과 4월 실업자
가 84만명으로 줄었고 5월에는 70만명대로 내려갈
것이 예상됩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에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간부직원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노사관계도 분규건수와 근로손실 일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
나 최근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을 중심으로 총파업
이 전개되어 불안요인이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金元培 기획관리실장입니다.

金容達 고용정책실장입니다.

安鍾根 노정국장입니다.

白日天 근로기준국장입니다.

鄭鍾秀 노사협력관입니다.

(간부인사)

민주노총 연대파업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노
동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 노사
당사자들을 접촉하여 설득하고 전 직원이 비상근

다음에는 새로 임명된 산하단체장을 소개 드리
겠습니다.

金在英 근로복지공단이사장입니다.

具天晝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입니다.

文亨男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입니다.

(산하단체장 인사)

양해하여 주신다면 金元培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주요업무현황을 자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勞働部企劃管理室長 金元培**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최근 노동동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입법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근 노동동향입니다.

올해 노사분규는 6월14일 현재 77건으로 전년 동기 109건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근로손실 일수도 전년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임금교섭은 작년보다 진도는 더디지만 인상률은 5.7%로 지난해 7.6%보다 2%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우려했던 민주노총 연대파업규모가 예상보다 작고 또한 순조롭게 타결되고 있어서 노사관계 안정기반 확산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대파업동향 및 대책입니다.

민주노총은 구조조정 중단, 근로시간 단축 등을 주장하며 6월12일 68개 사업장 1만5,000여 명이 연대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13일에는 병원 등 31개 사업장 1만6,200명이 참가했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그동안 분규 조기타결을 위해 총력을 경주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항공과 부산지하철 노사협상이 타결되는 등 파업참여 사업장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병원의 경우 6월13일 파업이 예고된 12개 병원 중에서 8개가 타결되어 오늘 아침 8시 현재 서울대·충북대·전남대·전북대병원 등 4개소가 파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추진 중인 대책을 말씀드리면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노사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노사자율해결 원칙 하에 합법적 노동운동은 적극 보호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분규 조기해결을 위한 유기적 대응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본부 및 46개 지방노동관에서 비상근무를 실시 중에 있으며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주요 사업장 분규발생 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사에 대한 지도, 설득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공연맹·보건의료산업노조 등 연대파업에 참여하는 주요 노조 지도부에 대해 설득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사업주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경우 중재회부 결정 이후에도 중재재정을 피하고 노사간 교섭을 적극 주선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논의를 본격화해 나가자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등 제도개선 사항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전개해서 노동계 요구사항을 제도권내로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현안 사업장 동향입니다.

먼저 효성 울산공장이 되겠습니다.

5월25일 노조는 울산지법의 쟁의행위금지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부분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 이외에 공장점거와 가동중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5일 경찰력이 투입되어 해산조치가 이루어졌고 회사는 6월5일부터 청소와 설비를 점검하고 6월13일 현재 가동률은 5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복귀율은 74%가 되겠습니다.

주요 쟁점은 임·단협은 저희 부 노력대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파업 주동자 해고범위와 민·형사상 면책문제를 놓고 노사간에 팽팽하게 의견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제기된 노사협상을 통해서 임·단협이 조기에 타결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천 NCC입니다.

2000년 임·단협 합의시에 별도로 체결기로 한 성과급 관련 보충협약 교섭에 진전이 없자 노조는 5월16일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 이후에 공장가동이 중지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1일 이후에는 광주노동청장 주선으로 교섭을 재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14일 경찰력이 투입해서 해산이 이루어졌고 2, 3공장이 정상가동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성과급 지급이 쟁점이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고소·고발 취하문제 그리고 동력시설, 근로자 쟁의행위금지문제, 조정실 농성해제 주장이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에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화를 통해 노사 자율타결에 주력하도록 지도해 나가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아시아나 노조입니다.

그동안 여섯 차례 임금교섭이 결렬되자 노조는 서울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노사 모두 서울지노위 조정안을 6월11일자로 거부했고 12일부터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종도 신공항수련원에서 노조원 1,300여 명이 농성 중에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임금인상과 기존 수당의 인상폭을 놓고 노사간에 팽팽히 맞서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저께 오후 3시부터 밤새도록 교섭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수당인상폭에 의견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 1시부터 다시 교섭재개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서울대병원입니다.

그동안 다섯 차례 임·단협 교섭을 하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조는 5월28일 서울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노위는 6월12일자로 중재회부 결정을 했습니다. 6월13일부터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으며 현재 병원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가 핵심 쟁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사간 집중적인 대화를 통해 조기 타결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대한항공조종사노조 파업입니다.

이미 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월24일 노조는 기본급 18% 인상 등 임금인상과 단협 보충협약 체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본교섭 3회, 실무교섭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마는 노사간에 교섭방법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두 차례 조정을 하였으나 결국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두 차례 행정지도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10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였으나 우리부의 집중지도 결과 6월13일 새벽 3시에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합의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고소·고발 취하 및 징계·민사문제 최소화, 그리고 외국인 조종사는 금년 말까지 동결하되 2007년 말까지 25% 내지 30%를 감축한다, 운항규정심의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최종 결정권은 사장이 행사한다 이런 내용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고용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동향을 말씀드리면 실업률은 경기둔화와 동

절기 계절적 요인으로 2월에 5.0%까지 상승하였습니다마는 4월 현재 3.8% 수준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또 5월 실업률은 이보다 더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난 속에서도 IT 등 신산업분야와 3D 업종은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는 등 인력수급 불균형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실업률은 급격한 경기변동이 없는 한 하향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洪思德委員** 위원장, 이 주요 업무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입법추진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한 다음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劉容泰** 하여튼 열심히 만든 것이니까 제목만이라도 간략하게 읽어봐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元培**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고용사정도 가변적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범정부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OC투자를 상반기 중 85%이상 집행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근로는 1/4분기에 17만명, 2/4분기에 18만명 규모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실업률 추이를 보아가면서 8만명 수준으로 축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업자 특성에 맞는 취업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졸업자 등 청소년 취업지원을 위해서 정부 지원인턴제를 통해서 취업지원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과 연계해서 대규모 지역별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취업 후견인제도를 도입해서 구직이 시급한 청소년과 직업상담원간에 1 대 1 결연을 통해 진로상담·직업지도·취업알선 제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입법추진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하세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元培**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입법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자고용촉진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령자 인재은행을 지정하고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환노위에 계류 중에 있으며 고령자고용촉진 대책을 마련해서 계류법안을 수정하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대량고용변동신고제도를 폐지하고 비정형 근로자 등에 대한 고용정책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3개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법이 되겠습니다.

일용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용·산재보험징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제정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보험의 적용, 보험료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입니다.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판매·대여업자에 대하여 성능·완성검사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입법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개 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申溪輪委員** 잠깐만요, 보고 중에 주요 현안사업장에 대한 전담감독관 지정·운영은 전국 43개소를 중점지도사업장으로 선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현황과 그 지도원칙이나 방침이 있을텐데 누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사업장 명칭과 운영현황을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元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지금 申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오전 회의 동안에 자료로 정리해서 오후 회의 하기 전에 申 위원님한테 드리고 각 위원님과 위원장한테도 같이 만들어서 배부해 주세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金元培** 예.

○**委員長 劉容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시간활용관계와 관련하여 부탁을

드렸는데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몇몇 위원님들은 시간에 잘 협조해 주시는데 또 몇몇 위원님들은 너무나 안 해 주시니까 시간을 지켜주시는 위원님들한테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차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급적 지켜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차 질의에 충분하지 못하면 차후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를 朴仁相 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仁相委員** 요새 분규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관님 이하 노동부 전체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국회에 처음 들어왔습니다마는 이렇게 모이면 언제든지 문제점이 나타나기 마련이고 어떻게 하면 문제점을 고칠 것인가 이런 것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아무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질의는 우선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분석자료는 5월에 비정규직 센터와 분석을 했고 또 자료가 많기 때문에 남는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고 핵심만 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분석해 보니까 비정규직 노동자 758만명, 이것이 소위 말해서 노동부에서 나온 프론테이지와 틀립니다. 58.4%, 남자가 약 370만명, 2명 중 1명, 여자가 382만명, 4명 중에 3명, 비정규직 10명 중 6명이 제조, 건설,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에 종사하는 것이 문제로 되어 있고 공공행정이 30%, 교육 47%, 보건복지 40%, 금융보험에 52%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노동시간은 정규직보다 길고 저임금계층이 611만명, 전체 임금노동자의 47.2%입니다. 저임금계층 정규직 105만명, 5명 중 1명이고 비정규직 506만명, 3명 중 2명입니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74% 내지 91%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22% 내지 25%이내입니다.

퇴직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연월차 적용률은 정규직은 73% 내지 90%, 비정규직은 16% 내지 23%이내입니다.

여성 유급출산휴가 적용률은 정규직이 56%, 비정규직은 5%입니다.

근속기간에 비례한 임금승급 적용률은 정규직이 76%, 비정규직은 5%입니다.

여기에 구분별로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자료를 일단 제출하기로 하고 우선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에 접근할 수 있는 최초의 조사라고 할 수 있는 2000년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를 앞에서 제가 총괄표를 말씀드렸습니다.

금년 4월17일 노동부는 노동부가 비정형 근로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렇습니다.

○**朴仁相委員** 임시계약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소제목 아래 일하기로 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유급 주휴, 유급 월차휴가, 유급 생리휴가, 유급 산전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등으로 실제 1년 이상 계속 했을 경우에는 퇴직금,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렇습니다.

○**朴仁相委員**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3조나 수차에 걸쳐 계속적인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상용직으로 본다는 판례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 내용에 이 부분을 삽입시켜 주는 것이 맞았는데 그 부분은 왜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23조, 계약기간입니다.

「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동부가 정말 비정규직 보호에 나설 의지가 있다면 내년에는 임시일용직 가운데 근속연수가 3년을 상회한 장기임시근로자, 인원을 따져보니까 137만명입니다. 상용직으로 전환을 하든지 내후년에는 근속기간 2년을 상회한 장기임시근로자의 상용직 전환, 단계적 행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비정규직을 상용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仁相委員** 이것이 원래 지난 국감에서 줄기차

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통계문제는 지난 번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도 金文洙 위원이 줄기차게 제기를 했던 내용이고 작년 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통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 통계를 우리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국감에서 통합조사에 대해서 고려하겠다고 장관이 답변했습니다. 지금도 그 각오는 가지고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그렇습니다.

○**朴仁相委員**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저희 부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관계부처와의 협의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朴仁相委員** 가칭 비정규직고용종합실태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고 하는데 5월31일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근로자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구성했습니다.

○**朴仁相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알기로는 구성은 해놓고 위원장과 전원이 선출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 되었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아직은 안 했습니다.

○**朴仁相委員**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틀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운영이 안 되어지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쓸모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돌리려고 판단하면 제대로 틀을 만들고 틀이 만들어졌으면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운영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실천으로 옮겨갈 때 이것이 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장관님 인정하시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실질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를 구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朴仁相委員**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 문제는 근본적으로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감사 때나 상임위원회에서 늘 지적이 나갑시다마는 근본적으로는 노동부가 주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이끌어 주셔야 되겠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노동부가 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근로기준법 운영 등을 바꾸었습니다.

○**朴仁相委員**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질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출퇴근길 교통사고 산재인정문제에 대한 여론조사가 인터넷에 뜬 것을 노동부에서 보신 분이 있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저는 못 보았고 산재 담당자가 보았을 것입니다.

○**朴仁相委員** 노동부 담당자는 보셨지요?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예, 그렇습니다.

○**朴仁相委員**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결과적으로 출퇴근 시 교통사고는 산재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93%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교원이라든지 군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통근차를 내서 나가는 것만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인정하고 있고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출퇴근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산재로 인정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 문제는 일본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정부담문제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朴仁相委員** 이것이 ILO 협약 121호를 보더라도 통근재해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고 있고 영국, 미국, 구주, 일본에 이르기까지 통근재해에 대해서 기준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처리하는 기준이 다르기는 하나 보험급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도 시급히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검토하겠습니다.

적용 시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朴仁相委員** 적어도 1년을 놓고 검토한다면 1년 이내나 1년 정도 텀을 준다면 충분히 검토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1년이든 2년이든 한시적으로 못을 박기는 곤란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朴仁相委員** 빠른 시일 내에 산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동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仁相委員** 다음은 대한항공 파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대한항공 파업을 어떻게 보느냐, 불법이나 아니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중노위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6월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한항공 노조의 조정신청사건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해서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5월11일 교섭 미진을 이유로 내린 행정지도 이후 두 번째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결정이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고 갔으며 중앙노동위원회가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정 중 행정지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남용입니다. 6월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서 3페이지에 보면 '우리 위원회는 6월8일 특별조정회의를 개최해서 노사 대표를 개별 접촉하면서 주장의 불일치사항에 대해 의견조율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6월8일 노사 양측을 접촉하면서 조정했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하고 있는 중에 같은 날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법 제5장제2절 조정에 보면 '일단 조정이 개시되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당사자 쌍방의 주장요점을 확인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고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종료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동조합법 제52조에서 제60조에 들어 있습니다.

중노위가 조정 중에 행정지도를 내린 것은 권한남용 아닙니까,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중노위로서는 이 문제를 우선 합법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자리에 중노위원장이 나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仁相委員** 시간이 가니까 보충질의에서 중노위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종료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여지가 있으니까 정리를 하

겠다고 해놓고 행정지도를 내리면 결과적으로 그 노동조합은 투표에 들어가면 불법파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노위가 이것을 잘못 처리해서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불법으로 몰아갔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구속으로 연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오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조정신청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결국 14명에게는 불법파업이니까 업무방해혐의로 노동부장관님도 잘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체포영장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노위 결정서 5페이지에서도 당사자간에 실질적인 교섭이 전혀 행해지지 못했다는 사실이 적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정되면 결론을 내려서 행정지도로 몰고 가면 안되지요. 그래서 행정지도와 조정절차문제는 전면적으로 쇠신하지 않으면 앞으로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2001년2월9일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고 5월16일 대전지방법원 판결, 99년 10월7일의 판결 등 파업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까지 나와 있는 판례가 있지요. 그것을 중노위 위원장님도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이것을 무리하게 끌고 가면 결과적으로 계속 불법파업, 체포, 구속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보충질의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쟁의 구속자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자가 지금 몇 명인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지금 현재 구속자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약 30명 가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仁相委員** 3년6개월 동안에 노동쟁의로 인해서 538명이 구속되었고 67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며 2001년 들어와서 6월12일 현재 구속자가 99명입니다. 문제는 제가 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이 파업이 일어나면 노동자들을 대량 구속하는데 파업중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 처리한 자는 몇 명이나 있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사용자 구속 통계는……

○**朴仁相委員** 제가 말씀드리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업주에 대해서 구속이나 사법 처리 실적

이 전혀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업주의 사례를 노동부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주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법의 형평성으로 공정하게 집행한다고 생각하면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사용자도 구속하고 불법을 하는 노동조합도 구속해서 형평성을 지니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제가 12일에 기자회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시다마는 법의 적용은 노사 양쪽에 공정하고 엄정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朴仁相委員** 그렇게 적용시켜 주어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레미콘 협동조합회장인 유재필의 경우에 거기에 회사가 8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400여 명을 전원 해고하고 신문상 용어로 표현된 것은 용역강패라고 했지만 그들을 동원해서 폭행을 가하고 부상을 입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구속시켜야지요. 결과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들만 계속 불법이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형평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삼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우자동차노조원 치료비 관련입니다.

(자료를 살펴보이며)

이것은 시사저널입니다. 여기에 보면 ‘맞아서 분통, 돈 없어 고통’ 타이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장관, 경찰청장이 발표하기를 부상자는 보상해 주어야 되고 치료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부상자 문제는 치료비라고는 딱 포함하지 않았습시다마는 상당히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仁相委員** 공권력이 잘못했다고 이미 사과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보상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입원환자가 노동조합이 보증을 서주지 않으면 퇴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돈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진행되도록 방치되었다면 불만 꺼지고 나면 그 다음 처리는 모른다고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을 진행하면 전체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자동차 노조원 치료비에 대해서는 즉각 정부보상이 되든 경찰청에서 발표를 했으면

책임을 지든지 해서 이 부분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우선 부상근로자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그 문제는 인천시라든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仁相委員**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金樂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樂冀委員** 장관님을 비롯한 노동부 관계공무원들 요새 노사분규 때문에 다소 고생들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는 민주노총 연대파업과 관련해서 항공사 파업을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6월12일 항공사 노조의 파업사태는 국가 경제손실뿐 아니라 국제신인도 제고에도 엄청난 피해가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 따르면 노동부가 항공사 소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파업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항공사 파업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황당한 얘기 같습니다.

○**金樂冀委員** 그러니까 파업한다고 얘기만 하지 파업은 하지 않고 타협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저희 노동부는 항상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파업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지도와 아울러 일단 파업에 들어가면 중재를 적극적으로 하고 들어가기 전에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완전히 예상했습니다.

○**金樂冀委員** 그런데 파업을 예상해서 예고된 파업으로 판단하신 것이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상된 파업이지요.

○**金樂冀委員** 예상된 것이나 예고된 것이나 똑같은 것인데 파업예방을 위해서 노동부로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우선 KAL 노조 사무국장과 공공연맹 위원장, 대표들을 불러서 우선 KAL 파업은 불법파업이 될 우려가 상당히 크니까 6월7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경제라든가 국민불편이라든지 국가의 대외

신인도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니까 자제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기를 바란다고 했고 또 대한항공 사장과 전무를 그 이튿날 불러서 적극적으로 교섭을 해서 문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말고 대화로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침을 주었습니다.

○**金樂冀委員** 그렇게 했는데도 불행하게도 여론은 노동부가 대한항공 파업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초기대응도 미흡했다는 것이 대다수 여론의 지적입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 지도는 공개하면서는……

○**金樂冀委員** 이것은 언론보도나 대다수 여론이니까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노동부는 공개나 홍보하면서 하면 오히려 파업 지도에 불리하기 때문에 장관이 한 번 얼굴 내는 것도 상당히 조심하고 현장에 가도 TV 모르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金樂冀委員** 6월13일자 조선일보에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직전까지도 대수롭지 않다고 과다한 자신감을 보여 왔고,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병원노조에 대한 중재를 게을리했다는 단적인 사례라고 보도되었는데 보셨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알고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같은 날짜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이번 연대파업에 대해 노동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였다, 정부가 허를 찔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셨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金樂冀委員** 노동부 관리들조차도 대한항공이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실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관리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언론보도를 100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것은 국민의 여론이고 언론이 지적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쨌든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언론보도는 사실이어야 하고 사실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여러 가지 파장을 고려하기 때문에 때로는 파업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발언하는 경우도 있고 중재 노력을 하면서도 노조와 사용자들에게 쓸데

없는 기대라든지 이런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서 몰래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노조지도자를 만나는 것을 사용자가 모르게 만나는 경우도 많고 사용자를 만날 경우에도 노조지도자가 모르게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노사관계라는 것은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노동부가 당황하고 과장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이런 것도 사회심리학적으로 고려를 해야 합니다.

○金樂冀委員 장관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질의를 하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동부가 그동안 사용자 누구누구를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만났고 노동조합 측은 어느 누구를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났는지 그 일지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勞働部長官 金浩鎭 예, 현장에서 지도한 것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働部長官 金浩鎭 예.

○金樂冀委員 본 위원은 언론보도를 보면서 정부가 국가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항공사 파업에 대해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대응했다는 것에 분노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항공과 관련해서 관계장관회의를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勞働部長官 金浩鎭 거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수도 없이 열었습니다.

○金樂冀委員 자료에 보면 네 번밖에 열지 않았습니다. 관계장관회의를 네 번 열었지요?

○勞働部長官 金浩鎭 관계장관회의를, 거기에 보면 쪽 나와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관계장관회의를 네 번 열었지요?

○勞働部長官 金浩鎭 네 번이 됩니까? 하여튼 일지별로 했습니다마는 6월6일부터……

○金樂冀委員 하도 많이 만나셨으니까 공식적으로 회의한 것을 기억 못하시는 모양인데 지난 6월 4일 사회장관회의는 누가 참석했습니까?

○勞働部長官 金浩鎭 정확히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행자부장관, 노동부장관, 법무부장관……

○金樂冀委員 장관님이 참석을 하셨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勞働部長官 金浩鎭 사회관계 장관회의는 제가 참석합니다.

○金樂冀委員 참석하셨지요? 그런데 이날 주요안건은 무엇이었습니까?

○勞働部長官 金浩鎭 며칠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金樂冀委員 6월4일자입니다.

○勞働部長官 金浩鎭 6월 연대파업관련 대책이었습니다.

○金樂冀委員 연대파업대책이었는데 중점적으로, 물론 현안으로 그 당시 파업이 상당히 격화되어 있던 시기니까 울산 효성과 여천 NCC문제가 중점적이었고 항공문제도 논의를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자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勞働部長官 金浩鎭 거기에서는 6월 연대파업 전반을 스크린하고 그 다음에는 각 개별 사업장대책 같은 것, 동향 같은 것도 논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런 것을 주로 얘기하지요.

○金樂冀委員 제가 파악하기로는 울산 효성과 여천 NCC가 주요의제였고 경찰병력의 투입여부를 논의했을 뿐이지 항공사파업에 관해서는 언급 정도 있었지 대책이 없었어요. 그러면 6월4일이면 6월12일이니까 일주일 전입니다. 앞으로 예고된 연대파업이 일주일 후에 일어난다는 것을 예상했다면 현실적으로 경찰력 투입을 별개로 떼어놓고라도 중요한 항공사파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안 나왔어요. 사실이지요?

○勞働部長官 金浩鎭 항공사파업에 대해서는 중노위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6월8일에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행정지도를 하면서……

○金樂冀委員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에만 답변하세요.

○勞働部長官 金浩鎭 그 시점의 단계는 행정지도 관련해서 우리가 지도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고……

○金樂冀委員 그 부분은 나중에 물을 테니까 나중에 답변하시고 지금 사회장관회의에서 연대파업 일주일 전에 나온 것이 항공에 관한 것은 자료조차 없어요.

○勞働部長官 金浩鎭 항공에 관해서 논의했지요.

○金樂冀委員 자료조차 없어요. 논의했다면 자료 있습니까? 그날 회의록 기록된 것 있습니까?

○勞働部長官 金浩鎭 회의록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金樂冀委員 그러면 그날 사회장관회의에서 자

료 나온 것 있습니까? 자료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자료라는 것은 유인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자료로……

○**金樂冀委員** 아니지요.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언급이 안 되고 나머지 울산 효성 것하고 여천 NCC 것 나왔고 항공사파업에 관해서는 전혀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자료에 없어도 논의를 합니다.

○**金樂冀委員** 논의했어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럼요.

○**金樂冀委員** 그러면 6월4일 그때까지도 노동부가 사실은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깊이 있는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없으니까 증거는 없습니다마는 노동부가 이런 점으로 미루어서 주무부처로서 항공사파업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저는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작년에 항공사파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서 아주 치밀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金樂冀委員** 그러면 6월8일 또 관계장관회의를 하셨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金樂冀委員** 그런데 그렇게 심각하게 봤는데 6월4일 항공사파업에 관해서 딱 대책이 너 줄 나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심각하게 생각한 것입니까?

그러면 사용자측이나 노사측에서 파업까지는 안 가고 그 전에 타협을 하겠다는 언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우선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교섭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노동부가 모든 개별사업장에 뛰어들어 가지고 해결사 노릇을, 직접 교섭 당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고……

○**金樂冀委員** 아니, 장관님 교과서적인 얘기는 사실 필요 없고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노사간에 자율교섭을 하는데 소위 파괴력이 큰 공익사업장에 정부로서는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당연히 그래야지요.

○**金樂冀委員** 그런데 이 자료가……

○**勞動部長官 金浩鎭** 파업에 들어가기 이전 지도의 수준과 역할이 다릅니다. 파업에 들어간 이후가 또 다릅니다. 파업이 끝난 뒤의 수습책이 또 다릅니다. 지금은 수습국면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3단계로 하는데 6월4일에 파업지도하듯이 해라 그것은 안 됩니다.

○**金樂冀委員** 파업지도가 아니라 예방행정 차원에서 예고된 파업이기 때문에, 아까 예고된 파업을 인정하신다고 그랬지요? 예고된 파업에 대해 정부는 예방적 차원에서 파업을 막아야지 파업을 지도할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당연히 막아야지요.

○**金樂冀委員** 파업을 막기 위해서, 불행한 사태를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 노동부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노사간의 중재역을 충실하게 했느냐 하는 여부를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과 실무교섭도 하고 노조대표, 공공연맹대표들도 불러서 만나고 장관이 직접 만날 정도니까 실무선에서는 이미 여러 번 만난 것입니다.

○**金樂冀委員** 그것은 나중에 설명하시고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그만하시고…… 만났다는 얘기는 아까도 하셨으니까 안 만났을 리야 없지요. 그렇다면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이나 다른 모든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대형사업장에 예고된 파업이 진행수순을 밟고 있는데 파업 3일 전에 나온 대책이 노동부 주무부서가 너 줄 정도 가지고 대책회의를 했다, 물론 하나도 없이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과연 적극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너 줄이 아니라 한 줄도 안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이상한 말을 써 가지고 평지풍파를 일으키기보다는 한 석 줄로 줄이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노사관계는 그렇게 민감합니다.

○**金樂冀委員** 장관님, 꿈보다 해몽이 좋으시네.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누가 봐도, 우리 국민이 봐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 파업 3일 전에 대책회의 딱 한 번 하면서 항공사파업에 관한 언급을 했는데 딱 너 줄 대책이 나왔어요. 과연 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했다고 누가 보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미온적인 대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사태를 자초한 것 아니냐 하

는 얘기입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鎮** 장관이 직접 문화일보에 자제를 당부하는 칼럼까지 썼습니다.

○**金樂冀委員** 또 하나 중노위원장님 여기에 계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朴仁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5월11일, 6월8일 중노위에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 당시 행정지도 남용을 말아라, 최소화시켜라, 행정지도를 통해서 많은 선량한 노동자들을 범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전부 사법처리해서 행정지도라는 절차를 거치면서 불법과업으로 몰고 가서 공권력을 투입하고 결론적으로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니까 중노위원장님, 그 당시 분명하게 최소화시키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5월11일, 6월8일 2차에 걸쳐서 행정지도를 했다 이거예요. 물론 중노위로서는 과업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고육책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행정지도가 남용되어서는 안 되겠다, 아까 朴仁相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지도만 믿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불법과업으로 몰아서 공권력 투입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발상은 정부로서는 버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노동위원회 시스템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엇그제 국회 건교위원회에서 吳長燮 장관이…… 지금 항공사 노동조합이 공익사업장이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鎮** 공익사업장입니다.

○**金樂冀委員** 그런데 필수공익사업장으로의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건교부장관으로서의 답변이고 이런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노동부장관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鎮** 그 문제는 우선 건교부의 안을 노동부가 무조건 받아들일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항공사업이 필수공익사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필수공익사업보다도 더 큰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업이 빈번하게 상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물론 이것은 장관님의 견해를 들은

것이지만 본 위원의 견해로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勞動部長官 金浩鎮** 그래서 노사정위원회 같은 데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마는 또 하나 행정지도가 남용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鎮** 그 문제는 중노위가 법과여건, 양식에 따라서 중립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남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남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金樂冀委員** 5월11일, 6월8일 두 번씩 나간 것이 남용이지요. 지난번 국감 당시에도,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드리지 않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화시켜라, 또 답변을 받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 사업장 똑같은 사건에 두 번씩 나간 것은 남용이지요. 결국 남용됐기 때문에 불법과업으로 규정됐고 그 자체가 사법처리로 연결되고 노동자 구속사태가 일어나는 등 악순환을 거듭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동자들한테 굉장히 자극적으로 적용되고…… 그렇게 안 보십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鎮** 노사 모두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은 존중하고 따라야 됩니다. 1차 행정지도 결정을 무시했으니까 2차 행정지도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행정지도 결정은……

○**金樂冀委員** 됐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제가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지금 다 하는 것입니다.

3일 전에 주무부서가 이렇게 미온적인 대책을 내놓고 하다 보니까 과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동부가 어떤 이유로도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노사를 불러서 설득하여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임무인데도 불구하고 뺑 터지면 공권력이나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鎮** 어제도 대한항공 사장을 불러서 ‘성실하게 평소에 노사관계를 협력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노사자치가 중요하니까 노사 당사자들이 교섭을 잘하라’는 얘기를 했습니

다.

그리고 파업 닷새 짜인 11일부터 저희들이 철야 근무를 하면서 끝날 때까지 현장중재를 직접 했습니다. 그 점을 잘 아실 테고, 저도 집에도 못 들어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樂冀委員** 좋습니다. 어쨌든 13일 9시를 기해서 노사간 타협이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마는 아직도 아시아나항공은……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 ‘다행’이 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樂冀委員** 제가 조금은 인정할게요.

아시아나항공이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빨리 그 파업이 종결되어서 우리 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제 자리에 돌아가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동부나 일반적으로 항공사 노조를 강성이라고 하는데 강성노조가 어디 있고 온건노조가 어디 있습니까? 강성노조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가깝게 접근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노사문제의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노동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고 이와 같은 큰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장관님 울산도 가셨고 여천도 가셨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갔었습니다.

○**金樂冀委員** 가서서 파업현장에 가셨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파업현장을 가는 것은 문제 해결에 상당히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공장을 가보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마는 가지 않고 세 가지를 하고 왔습니다.

하나는 시장과 경찰청장을 만나서 하여튼 이 문제를 지역레벨에서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간이 걸리니까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두 번째는 노조위원장과 노조 측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대화로 풀도록 했고, 그 다음에는 사용자 대표를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울산에서 여천, 여수로 승용차로 가서…… 힘들었습니다마는 여천에 가서 하고 그 이튿날 올라왔습니다.

○**金樂冀委員** 방법상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까. 마는 저는 생각이나 사건 자체에 따라서 장관께서 현장에 가셨으면 파업현장에 들어가서 진솔하게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물론 대표만 별도로 불

러서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은 노동부가 판단해서 할 일이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현장에 뛰어 들어서 용감하게 전체 노동자를 설득할 용의는 없으셨어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필요하면 할 용의도 있고, 제가 지난번 대우사태 때 산곡성당 현장에 뛰어 들어서 온갖 곤욕을 다 치른 것도 필요하다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서 오히려 문제를 그르칠 우려가 있다, 이것은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뭐합니다마는 전략적인 사고와 판단과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노동계 입장이 아니고 경영계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고생하는 노동자들한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래도 어깨 한 번 두드리줄 수 있는 폭넓은 노동부장관, 겁먹지 말고 뒤에서 간부나 불려서 얘기하지 말고 전체를 상대로 설득하는 용기를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마음을 비우고, 겁은 안 먹겠습니다. 제가 산곡 간 것도 겁이 나면 못 갑니다. 가서 생명보험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金樂冀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容泰** 그래서 생명보험 드셨어요? 아직 안 들었어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생명보험 안 들고 가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계속해서 崔明憲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崔明憲委員** 장관 이하 평소 고생하시는 노동부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서면으로 질의하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금에 대통령께서 위법한 사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구체적인 안을 작성해야 될 정부로서, 노동부로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을 성안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崔明憲委員** 작금에 대통령께서 앞으로 노사문제는 법에 의거해서 엄히 다스리겠다는 담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관해야 될 노동부로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성안하거나 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참 많은 우려를 하시고 불편을 겪으시고 온 세상을 시끄럽게한 이런 항공파업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른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첫째, 법을 지키는 노사관행이 산업 현장에서나 사회 전반에 확실히 정착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경영자와 노동자가 서로 상생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기업은 투명경영을 하고 근로자에게는 응당한 몫을 상대적으로 공정하게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계가 요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라든가 기타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활발하게 논의해서 제도적으로 불만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崔明憲委員** 장황한 설명을 듣다 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느끼는 것은 법의 적용은 노사관계에만 한다고 했는데 이번 항공업계문제나 병원문제 등에 있어서 정부부처간의 협력이 전혀 없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장관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항공업계 파업문제만 하더라도 노동부장관 생각 다르고 건교부장관 생각 다르고, 의견이 백출하는 양상으로 국민들 눈에는 비쳤어요.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항공업계문제가 일어났을 때 담당부처 장관인 건교부장관은 전화 한 번 했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를 더욱 불신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어요.

법의 적용문제 뿐만 아니라 정부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노파심에서 앞으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가 문제될 수 있지 않나 지적하고, 가깝게는 노동부 내에서 자체적인 노사분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나 하면 IMF사태 때 고용했던 임시직 직원이 현재 2,000명 정도 남아 있는데 그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고 굉장히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 내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도 정부에 있어 봐서 꼭 그런 것을 느

낫다마는 노동부 자체 내 각 국별로 협조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여기 국장들 나오셨는데 노정국과 노사협력관실이 제각기 하고 있는 일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지요? 노정국장 어디 있어요?

○**勞動部勞政局長 安鍾根** 예, 여기 있습니다.

○**崔明憲委員** 그런 사실 알고 있어요?

○**勞動部勞政局長 安鍾根**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明憲委員** 노정국장이 담당하는 것은 한국노총이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 문제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실장 중심으로 노정국과 노사협력관실이 매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崔明憲委員** 그것은 아는데 部の 기구 자체도 무엇인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노동부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봉급이 높다고 해서 과거 노동부에 있던 근로감독관 등 우수한 인력들이 그쪽으로 다 가고 있어서 실제로 일선에서 업체나 근로자들을 상대해야 될 인원들이 부족한 상태인데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는 노사분규에 대처할 자신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노사분규에 대처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을 지키는 관행을 정착시키지 않는다면 저희들 노력만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법을 지키는 노사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崔明憲委員** 곁들여서 노동부가 사회부문 쪽에 속하고 있는데 나는 노동부만은 사회와 경제 양쪽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서 늘 노사를 대변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특히 정부 내 경제장관회의에 들어가서 노동계를 대표할 수 있는 국무위원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노동계를 대신하는 노동부장관 입장에서는 그 경제장관회의에 들어가서 대담하게 근로자를 대변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容泰** 수고하셨습니다.

全在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全在姬委員** 노동부장관님과 노동부 직원들이 연일 계속되는 연대파업 등을 수습하시느라 노고가 크시다는 것은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나 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체계적이고 확실한 의지를 가진 수습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朴仁相 위원님께서 대한항공 파업수습과 관련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남발함으로써 조정전치주의 규정 자체를 오히려 악용하여 무력화시켰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朴仁相 위원님의 질의에 동감을 표하면서 또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대한항공에서 마련한 사측보고서에서, 항공조종사의 파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데 있어서 교섭을 회피해서 행정지도를 얻어내야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측은 교섭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조정신청을 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이 아직 미진하니까 더 해보시라고 행정지도를 내립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 노동부가 사용자의 교섭회피에 대해서 얼마나 엄정하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 파업을 막을 수 있는 관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진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공정하게 조정해야 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측의 행정지도 악용을 그대로 동조하거나 방기함으로써 이것을 불법파업으로 몰고 가는 것은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앞으로 근로자의 신뢰를 얻어가는 데 있어서 큰 흠결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동부의 중재노력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노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행정지도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장관의 분명한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19일에 李南淳 한국노총위원장이 단식농성을 한 이후에 金大中 대통령과 면담한 자리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신규설립을 둘러싸고 각종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사간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과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사용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맞지요, 장관님?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全在姬委員** 그리고 노동부는 그 후속조치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노동뉴스로 발간하셨지요? 저희 집에 배달된 5월30일자 노동뉴스에 톱으로 ‘부당노동행위 엄중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은 대표적 사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장관님! 지금 건설운송노동조합이 여의도에서 계속 파업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알고 있습니다.

○**全在姬委員** 이 건설운송노동조합의 파업이, 2000년 10월27일 노동부 질의회신 답변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2000년11월15일 인천지노위에서도, 레미콘 운전기사는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사용자는 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2001년3월13일 서울지노위도 거의 대등한 내용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4월6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들이 노동법과 나아가 헌법적 보호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점과 지금의 노동쟁의상태에 이르는 과정에서 회사들의 잘못이 크다는 사실에 맞추어 하루빨리 노사교섭의 장을 만들어 성실하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노동쟁의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4월13일에는 인천지방법원이 노동조합법 상의 근로자이며 합법적인 노조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용자들은 계속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우리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교섭을 안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4월10일 건설운송노조위원장을 만나시고, 12일에 레미콘협회 柳在泌 회장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교섭을 회피하니까 노동조합은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4월6일 인천레미콘 구자영 대표이사를 고소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고소되었습니다. 물론 사안이 많다고는 하지만 노동부가 이 구속 품신을 5월12일에 해서 39일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교섭을 회피한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사업현장이 파업으로 치닫고 있고 근로자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노동부는 이 사건을 조사하는 데 39일이 걸렸습니다. 또 柳在泌 유진개발 대표이사를 4월20일에 고소했는데 6월9일에 구속 품신을 해서 무려 49일이 걸렸습니다.

과연 이렇고도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치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입이 열이라도 답변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노동부에서도 그렇고 지노위도 중노위도 법원도 분명하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근로자이고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했는데 사용자는 막무가내로 교섭을 거부하고 불법한 대체근로를 시행하고 있다면 이것은 밤을 새워서라도 조기에 수사종결을 해서 구속 품신할 것이 있으면 하고 또 장관이 그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셔야 됩니다.

울산 효성중공업도 중요하고 대한항공도 중요하지만 이 뜨거운 피약별 아래 여의도에서 밤낮 없이 농성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뛰셔야 되는데 노동부가 지금 노사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했다는 것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6월1일에 노사협력관이 李用植 건설연맹위원장과 이홍우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5월14일 레미콘협회장 柳在泌 등 사측 관계자를 면담한 것이 나와 있을 뿐입니다.

장관님! 노동부가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노동뉴스를 전국에 배포할 수 있습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뉴스로 나가든 공문으로 나가든 말씀으로 나가든 그것이 100% 이행되는 신뢰성을 갖지 못할 때 노동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에 대해서는 질타를 받을 뿐입니다.

노동위원장이 대통령을 만난 후속조치로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노동부가 그 이후에 대응하는 것이 너무나 다른 데 대해서 아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님! 답변해 보세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우선 레미콘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노동부가 정말 열과 성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지루합니다마는 아주 여러 차례 노사측을 만났습니다. 다 합치면 한 40여 차례 됩니다. 지방관서에서도 가고 본부에서도 가고 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관도 만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조치하는 데는 아시겠습니까마는 우선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엄정히 조사해야 하고, 두 번째는 柳在泌 사장이 해외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런 개별사안의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6월12일 현재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신고된 것

이 한 100여 건이 넘는데 이중에서 55건은 기소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全在姬委員** 장관님! 근로자들이 고통받고 있고 노사분쟁이 격화되는 사건이 그렇게 오래 49일이 걸리고 39일이 걸린 것을 장관님은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답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동부 직원들이 실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늦게까지 고생한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완급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속수사하는 데 49일, 39일 걸린 것도 장관님은 적정한 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시고 고칠 것은 고친다는 자세로 나가셔야지 그렇게 항변만 하실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아니, 물론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고와 채찍을 아주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업무의 우선순위, 완급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때 우리 노동부가 모든 사안을 다 한꺼번에 챙기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全在姬委員** 그리고 장관님, 이른바 구사대라는 문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全在姬委員** 114 분사와 관련해서 114에 있는 여성 근로자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분사 반대를 하는 장기 농성을 했었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렇습니다.

○**全在姬委員** 그 과정에서 회사가 청경을 동원해서 근로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사람들이 무서워서 집에 가게 하겠다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근로자들 20여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고 놀라운 것은 어떻게 여성 근로자들을 청경을 동원해서 이른바 구사대의 명목으로 폭행할 수 있는가, 더욱 놀라운 것은 인근에 경찰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럴 경우에 제재하지 않고 방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자들이 무서워서 못 있겠다고 100여명이 의원회관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밤에 金文洙 위원하고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돌아가면 우리가 진상조사를 해서 해결해 주겠다

고 그랬더니 무서워서 못 간다는 겁니다.

여성 근로자가 그 완력이 센 청경으로부터 그렇게 폭력을 당하는 것을 노동부는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무 조치도 안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이 현장에 갔습니다. 갔더니 단전·단수를 해서 화장실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봉쇄를 시켜놓았습니다. 이것은 인권을 유린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인권을 유린하는 현장이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장관께서 찾아가서 단전·단수만은 시정해라, 이 구사대에 대해서는 고발이 없더라도 노동부가 직접 찾아가서 조사해서 사용자를 질책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나가서 단전·단수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사측에서 그 구사대의 폭행한 사람을 가려서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시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갔을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분사의 문제는 경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에서 의원들이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시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시정이 되고 또 노사분규도 타결점을 찾은 겁니다.

장관님, 울산 효성중공업의 경우에도 이른바 노숙자를 동원하는 구사대의 활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노동부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겠습니까?

그냥 회사내의 분쟁이라고 해서 방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막지 않으면 이것이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해서 앞으로 노사간에 불신이 더 커지고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커집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우선 사용자측이 용역 경비원이라든가 기타 외부인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14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114 문제는 지금 원만하게 타결이 되었습니다.

○**全在姬委員** 앞으로는 단전·단수라든지 구사대 문제가 국회의원이 나서지 않고 행정부 차원에서

수습이 완료되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특히 여성 근로자에 대한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저희들도 해당 사무소라든가 청이라든가 근로감독관들이 현장, 특히 예방행정 중심으로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도 사무실을 너무 비울 정도로 현장에 많이 다닙니다마는 제가 직접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이 일일이 다 현장에 가는 데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全在姬委員** 장관이 일일이 안 가셔도 됩니다. 차관이 가셔도 되고 국장이 가셔도 됩니다. 그것을 가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제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동부가 산재사고와 관련해서 검찰청에 올린 구속요청 건수 및 그 결과를 1999년, 2000년, 사건별로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산재예방에 관한 문제라든지 피부미용사에 관한 문제는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하겠습니다. 시간을 더 써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容泰** 수고하셨습니다.

申溪輪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溪輪委員** 방금 전에 全在姬 위원께서 말씀하신 일명 구사대와 관련되어 폭력과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노동부장관, 명확하게 사실여부를 파악해서 전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권국가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용납될 수 없고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 명확하게 조사해서 전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렇게 하겠습니다.

○**申溪輪委員** 많은 위원님들이 민주노총 관련 파업에 대해서 개별 현안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고 믿으면서 아울러 저는 이번 노동부 직원들이 다른 때와는 달리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적을 잘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대응을 더 잘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저는 이번 파업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의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큰 주장을 보면 ‘구조조정을 중단해라’ ‘근로시간 단축에 빨리 합의해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일면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일면 나라의 정책과 관련된 것입니다.

반면에 단위 사업장은 임·단협 관련해서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중심으로 한 단위 사업장에 파업이 있었습니다. 일견 보기에는 단위 사업장 요구와 민주노총 지도부의 요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나 하면 제가 보기에 이번 민주노총 지도부의 파업이 일종의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번 민주노총 파업은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번에 파업이 정리되고 일단락 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하반기에 있을 민주노총 요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도개선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일단락 되더라도 이번 사태에 집약적으로 나타난 제반의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와 제도개선 요구를 한데 묶어서 노동부가 하반기에 노동대책 수립에 중점적으로 임할 준비를 갖추어야 된다는 요구를 노동부장관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노동부가 잘해 나가면, 정부가 잘해 나가면 오히려 노동자들이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불신과는 달리 좋은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각종 사업장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요구를 수렴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대로 정리하고 기타 다른 방법도 정리해서 노동자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劉容泰 위원장, 金樂冀 간사와 사회교대)

또 하나는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지도나 직권중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도개선 요구와 관련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 같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라도 일선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이나 행정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

다. 그 원인과 이유가 노동부에 있건 노동조합에 있건 또 다른 요인에 있건 간을 불문하고 상황은 이렇고 근로감독과 행정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는 같이 합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 하는 분석이 노동부에 첫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회장관회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동부가 불법파업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현장노동자들에게는 그렇게 적절하게 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불법파업 경고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이 아울러 노동부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정부는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과거보다는 정부의 입장이 많이 변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가 한쪽에 편향되어 있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왜 그렇게 되었는가 분석해 봐야 됩니다.

제가 14대 때부터 노동위원회 활동을 하고 한 번도 다른 위원회에 가지 않고 이 위원회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계속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어요. 많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이것도 노동부에서 총괄적으로 반성하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노정간의 문제로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은 정권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게 되고 기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이 점에서 한 번 짚어야 할 대목이니까 노동부가 분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에게는 한 번 마음속으로 정하면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단에게도 마찬가지인데 노동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자기를 버리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과연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노사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원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냐 하는 의문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병원노조의 경우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권중재조항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全在姬 위원이 말했지만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행정지도라는 빌미로 해서 교섭회피사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직권중재조항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사용자 하여금 단체교섭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사례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직권중재조항이 오히려 단체교섭 회피수단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증거와 확증이 더 많다면 법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파업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 문제가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다시 재점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병원노조 지도부가 직권중재조항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처신한 면도 있고 해서 많은 병원들이 해결되어 가고 있고 몇 군데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자체는 나름대로 남겨두더라도 이번 사태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필수공익사업장으로서의 직권중재제도가 과연 우리 노사간의 관계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저해가 되느냐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고민하고 노동부가 쌓아놓은 자료를 가지고 꼭 검토해서 도움이 된다 방해가 된다 이런 판단을 한번쯤 내려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조항도 노사간의 문제를 노정간의 문제로 결정적으로 다가서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것이 효과적이라면 좋겠습니다만 효과적이지 아닐 때에는 정부에게 부담만 주고 노사관계의 자율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파업을 했는데 조종사나 관제사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공익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비교들을 볼 때도 그 사업장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검토를 노동부가 직접적으로 바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끝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관계된 것인데 이번 사태를 꼭 점검하십시오. 점검을 해서 단위사업장에서 나온 문제라 하더라도 제도개선 요구가 걸려 있는 것은 취합을 하십시오. 장관 직속에 이 사태를 마무리하고 향후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특별한 반이나 실무반이 구성되어서라도 아니면 공식기구를 통해서라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수집을 해서 제도개선 요구가 무엇 무엇이 있는가 전부 분류해 보십시오. 필요 없는 것 그리고 단기간 시행이 가능한 것,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을 나누어 보고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고 여러분들의 요구를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같이 참여시키십시오. 그래서 당장 필요한 제도개선이 있으면 하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구조조정 중단을 요청했다,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지금 구조조정 중단하면 뭐가 되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오는 노동계의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고통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인가 왜 노동부에서 마련을 못합니까? 저는 마련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미진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불신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계획을 민간업체든 공기업이 되었던 세운다고 한다면 어쨌든 노동부가 그 계획에 대해서 사전협의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전 승인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경제부처에서 구조조정계획을 검토하고 협의하듯이 노동부에서도 구조조정이 노동자들한테 직접적인 타격과 희생이 되기 때문에 그 타격과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협의를 왜 못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소라고 민주노총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근로시간 단축문제도 시간을 끌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도 사용자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협의하면 가능한데 책임지고 내가 목숨을 걸고 수행해서 반드시 이룩해 놓겠다는 결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행정부서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장관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일이 진행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얼토당토않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모든 사항은 우리 정부에서 우리 노동부에서 수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정도밖에 수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노총도, 저는 늘 민주노총 사람을 만날 때마다 “지금 즉시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십시오. 이것만이 당신들한테 필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서 마련합니까? 정부에서 구조조정 중단에 대해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정은 어떻게 진행될 것입니까라고 같이 말할 수가 있다면 저는 야당의원들과 함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촉구하고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노총의 많은 조합원들이 많은 언론 논조와는 달리 건강하고 아직도 민주적이고 애국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좀더 당부드리는 것은 노동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도 한번쯤 총정리해서 재평가하고 이번 파업사태를 보다 발전적인 계기로 삼아가려는 노력을 진지하게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자꾸 강경분위기에 대한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하게 나가야 되고 파업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조와 흐름이 있으면 그런 기조도 있고 반대되는 기조와 흐름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토론이 가능합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일방적으로 갑자기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가 우세했다가 반대경향이 우세한 경향도 있습니다.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너무 지나친 분위기가 현재 진행 중인 노사간의 협의와 협상을 방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당사자가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지요. 직권중재 때문에 사용자와 교섭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듯이 이러한 상황에 편승해서 합리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노사관계의 협상·협의를 방해받지 않도록 노동부의 좀더 세밀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업장 지정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그런 자료를 같이 검토해보는 것이 아까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목숨을 걸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내실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빨리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질의가 안 되고 당부가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樂冀** 申溪輪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金文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文洙委員**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판단컨대 현 정부 들어 대통령께는 수십 년 동안 노동전문가라고 자처한 분들이 많아서 과거 어떤 역대 대통령보다 노동문제에 대해서 많이 아신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노사정위원회가 없었던 것이 초법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노사정위원회를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YS 정권 때도 중노위를 강화해서 장관급으로 승격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대통령이 직접 노동문제에 대해서 언급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면 구속자 숫자가 지난 정권 때보다도 더 많습니다.

YS 정권 때는 5년 동안 총 507명의 구속자가 나왔습니다. 1년에 약 100명 꼴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3년5개월 동안 지난 5월 말까지 노동과 관련하여 529명이 구속됨으로써 1년에 150명 꼴로 구속자 숫자가 약 50%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체포영장이 73명 발부되어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의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속자가 나오고 노사간의 갈등이 더 악화되고 국민들이 더 불안하

게 되는 데 대해서 장관의 책임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우리 나라 노사 관행이 아직도 법을 지킨다든지 서로 교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아직도 부당노동행위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투쟁을 통한 문제해결의 전통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과정 속에서 구속자 수가 늘었다고 봅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면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과거의 관행이 서서히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구속자의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제가 묻는 것은 과거의 여러 가지 관행이 끝이 나지 않았다는 답변은 되는데 왜 이것이 갑자기 늘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군사정권도 아닌데 어떻게 중산층과 서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거꾸로 올라가느냐는 말입니다. 대통령도 노동전문가라고 하는데 자꾸 올라가면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바로 장관의 무능 때문에 그렇다, 이 점이 굉장히 크다, 노동부가 바로 이 점에서 굉장한 각성·반성·점검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점점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장관께서 멀리도 말고 군사정권 때를 제외하고 과거의 전 정권 金泳三 정권 때보다도 지금 金大中 대통령이 들어온 다음에 구속자 수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실태가 어떤지 그것을 상세하게 점검해서 다시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알겠습니다.

○**金文洙委員** 두 번째로 우리 金大中 대통령께서 사회적 합의기구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치적으로 IMF 초기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우리 정당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참여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사정위원회가 가동되면서부터 사실상 노동부가 노사관계에 관련된 조정업무, 장기적인 발전에 관련된 업무를 완전히 방기하고 있다, 모든 업무를 노사정위원회에 맡겨 놓고 노사정간에 해보라고 해놓고 노동부는 완전히 손놓고 방치함으로써 이런 악화된 노사분쟁을 가져 왔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나 하면 노사정위원회는 실제로 노사간에 대화를 해야 되는데 노사정위원회에서 민

주노총이 탈퇴하였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그렇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런데 이번에 주로 강성과업을 주도하는 것이 민주노총이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지금 파업은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면 가장 강성과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노사정위원회가 가동되려면 민주노총이 거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을 여러 번 받았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렇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런데 못했지요? 이것은 장관 책임입니까, 노사정위원회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노사정위원회가 대통령자문기구이니까 대통령의 책임입니까, 세 분 중의 누구 책임입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것은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 투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낙후된 노사문화에 원천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니까 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우선적으로 민주노총에 책임이 있지만 정부당국으로서는 노사정위원회는 대통령자문기구이므로 대통령의 자문을 받아서 하니까 대통령의 책임입니까, 노사정위원장의 책임입니까, 장관의 책임입니까? 3자 중에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오게 하려면 노사정위원장도 노력하고 장관도 노력해야 하지만 노동계 자신들도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金文洙委員** 인식의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답이 없네요? 행정부가 노동계의 인식의 전환을 쳐다보고 있는 천수답입니까, 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노사정위원장도 노력하고 노동부장관도 노력하지만 그러한 인식의 전환이 없는 한 노력은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金文洙委員**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 낼 행정부의 책임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나 하면 우리 국민이 세금을 내서 공무원한테 봉급을 주고 대통령한테 봉급을 주고 노사정위원회에 예산을 주고 장관에게 봉급을 주고 노동부직원한테

봉급을 주는 이유는 그 세금을 가지고 바로 노동계의 인식의 전환을 끌어내고 각 당사자의 인식의 전환을 끌어내어서 개선을 기대하는 것인데 점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노사분쟁 현실에 대해서 책임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은 책임이 분산됨으로써 결국 문제가 터지면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다가 아무도 책임을 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관님 답변을 들으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들으면 기가 막힐 것입니다. “노동계의 인식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는 데……

○**金文洙委員** 노력의 책임이 누구입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책임은 공동의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면 공동의 책임이기 때문에 대통령, 노사정위원장, 장관 세 사람의 공동책임이지요. 그 중에 특히 주무자가 누구입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대통령께서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면 노사정위원장과 장관 둘 중에서 누구의 책임입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것을 가려서 뭐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노사정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노사정위원장도 노력하고 노동계에서도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노사정위원회의 세 주체 중의 하나의 주체로서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는 것입니다.

○**金文洙委員** 바로 이 점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에 함정이 있다고 계속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나,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를 바람직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노동부장관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해서 노동업무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책임을 지라고 장관한테 책임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사정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자문기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장관님, 노사정위원장과 장관님간의 책임 소재와 한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겠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노사정위원회는 법적인 기구입니다. 그 자체가 법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습니

다. 고유의 권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대의기구로서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기구라고 해도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에는 노사정위원회의 고유 권능이 있습니다. 그 고유권능을 노동부장관이 침해할 수 없습니다. 노사정위원회의 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金文洙委員** 장관님이 노사정위원장 출신이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金文洙委員** 지금도 현직 장관이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노사정위원장이 노동부장관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金文洙委員** 노사정위원장이 장관의 지휘·명령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께 모든 책임이 있는데 장관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나라 정부조직법은 어디가 버렸느냐, 정부조직법상 우리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노사관계의 발전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 국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정위원장도 같이 모셔놓고 두 분을 동등한 자리에 모시지 않습니다. 장관님을 주무장관으로 해서 우리가 책임을 따지고 있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말씀하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여야 협력관계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국회의장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노사협력관계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金文洙委員** 복잡하기 때문에 책임자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의 기본입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나한테도 조금은 있지만 나는 책임 안 지고 책임은 노사정위원장한테 있습니다. 공동책임입니다.”라고 답변하시는데……

○**勞動部長官 金浩鎭** 책임져야 할 일은 당연히 책임져야지요.

○**金文洙委員** 행정은 공동책임이라도 분명하게 주무책임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행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장관님께서 바로 자기의 책임, 노동부의 책임, 장관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악화된 노사분쟁을 방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노동행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나 노사정위원회가 잘 안 된 데 대해 노·사·정 세 파트너 중에 한 파트너인 내가 노사정위원회까지 책임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너무 과장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金文洙委員**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사관계가 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전 정권에 비해서 구속자 숫자가 50% 늘어났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했고 국민들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가 더 악화된 데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려를 책임지고 해결하고 개선해 나갈 주 책임자가 노사정위원장입니까, 노동부장관입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노사관계가 악화되었다고 말하는데 구속자 수가 노사관계의 악화를 전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6월14일 현재 분규건수가 77건이고 작년 동기에는 109건이었습니다. 근로손실일수도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노사관계가 상당히 좋아진 것 아닙니까?

○**金文洙委員** 방송에 나가서도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방송에 나가서 그 주장을 계속하시던데 진행자가 KBS 김종찬 씨였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온 전국이 죽을 판인데 좋아지고 있다는 통계를 대니까 장관이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은 어렵고 불이 붙어서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데 좋아졌다고 하니까 의아해 합니다. 좋아졌으면 걱정할 것이 없네요? 국민들의 걱정이 전부 기우네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두 번째,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책임을 명료하게 하고 세 번째, 명료한 책임을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장관님은 무엇입니까? 인식이 틀렸고 안이하게 '잘되어 갑니다.'라고 합니다. 남들은 파업이 되어서 난리인데 '잘되어 갑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책임을 물으면 '노동부장관의 주책임이 아니라 노사정위원회와 공동책임입니다, 대통령하고 삼자 공동책임입니다.'라고 답변하십니다.

세 번째, 열심히 뛰십니까? 장관님, 6월1일에 효성 울산공장에 가셨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갔습니다.

○**金文洙委員**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울산공

장의 분규현장에 가보셨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분규현장인 공장에는 안 갔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런데 여기에는 전부 '현지 지도'라고 해놓으셨는데 물론 울산까지만 가도 현지에 근접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장에서 분규가 일어났으면 공장현장을 들어가 보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분규가 일어났을 때부터 현장에 가는 것이 문제해결의 바람직한 길이나 아니냐를 거기에 가서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오히려 문제를 더 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많아서 노조간부들을 밖의 사무실에서 만나고 사용자 대표도 만나서 협의회까지 부탁하고 시장과 경찰청장을 만나서 대화로 잘 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그날 밤에 여수로 떠났습니다.

○**金文洙委員** 그 다음날인 6월2일에 여천 NCC도 현지방문 지도를 하셨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렇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때 공장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곳도 마찬가지로 안 들어갔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공장에는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임위원회가 끝나면 아시아나항공에 가느냐 안 가느냐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아주 복잡한데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간 사실을 노사가 알게 하느냐, 사를 만났을 때 누가 알게 하느냐 모르게 하느냐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주요한 파업현장 중에서 장관님의 현지방문이라는 것은 그냥 그 지역까지는 가는데 그 분규현장, 공장, 사업장 같은 곳에 간 곳은 어디입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우선 산곡농성장에 가서……

○**金文洙委員** 산곡농성장은 산업현장이 아니잖아요, 산업현장에 직접 가신 것을 묻는 것입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가서 근로자대표도 만나고 段炳浩 씨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났고 대우공장도 내가 세 번이나 가지 않았습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가는데 문제는 노동부장관이 한 사람이니까 분규가 전국 곳곳에서 났을 경우에 몸을 분해해서 갈 수도 없고

꼭 가야 할 경우에는 가고 장관이 가야 할 경우와 국장이 갈 경우, 소장이 갈 경우를 나누어서 여러 가지로 현장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장관님은 몸이 하나인 것을 인정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책임이 장관에게 있다고 할 때에는 장관 밑에 노정국장도 있고 노사협력관도 있고 많은 공무원들이 있지요? 또 공무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간전문가라든지 노사관계 전문가를 장관님이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지요? 그런 위치에 있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金文洙委員** 그러면 그 전문가를 조직하든지 해서 현장에 보낼 수도 있고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사관계의 주요한 업무를 다 노사정위원회에다가 상당한 정도 위임하고 있는 것이 현재 노동부의 분위기이고 이 정권 들어오고 난 뒤의 지속적인 흐름이 그랬다는 말이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것은 모르십니다. 지금도 아시아나 교섭현장에 서울청장이 나가 있고 어제 또 나가서 밤샘 지도를 하라고 내가 하고 소장이 라든가 청장들이 현장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여천 NCC도 국장이 가서 4일이나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계속 국장이 있을 수는 없지요. 현장지도는 철저히 합니다.

○**金文洙委員** 장관님, 저하고 장관님하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장을 다 알지 않습니까? 노동부 관리들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능력과 영역이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노사에 대한 면식관계 또는 관리와 다른 여러 가지 노하우가 전문가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그렇습니다.

○**金文洙委員** 노사정위원회가 바로 그러한 점을 많이 고려해서 노동부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일정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金文洙委員** 제 질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알겠습니다.

○**金文洙委員** 아시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장관님이 그 업무를 자기 책임으로 느끼고 있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노사정위원회에서 할 일

이지 왜 내가 해야 되느냐, 노사정위원장은 뭐라고 합니까? 노사정위원장이 가질 수 있는 권능은 아주 작아요. 그분은 민주노총이 들어오면 좋은데 민주노총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많은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간에 어쩔 수 없다, 노사정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안 들어오는 것을, 내가 대화를 몇 번 해 보고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장관은 그것은 노사정위원회의 업무다 서로 이렇게 떠넘기고 있다는 말이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노사정위원장도 노력하고 저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고 노사정위원회는 제도개선을 노사정이 합의로 하는 민주적인 기구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는 노동행정, 그 중에서도 현안분규 같은 것은 노동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야지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현장지도도 하고 KAL 파업 났을 때는 저도 바깥에서 밤을 새우면서 사무실 책상 위에서도 자고 했는데 이런 사실을 잘 모르시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노사관계 전반이 꼬이는 데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자꾸 얘기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金文洙委員**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고 또 장관님 책임이 아닌 것을 자꾸 문책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답답한 점이 있고 장관님의 그런 점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노사 당사자들이 장관님에 대해서 굉장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느냐, 해결되겠느냐, 희망이 없나……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우려하고 장관님께서 정말이 문제의 심각성을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조차 못하고 제가 얘기해도 제가 몰라서 그렇고 노동자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그렇고 책임은 공동책임이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은 안 되겠구나, 개선책이 없구나, 바꾸는 수밖에 없구나…… 걱정입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또 金 위원님의 충고말씀을 토대로 해서 노사관계가 더욱더 전향적으로 협력적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자꾸 못하는 부분만 지적하니까, 물론 채적으로

감사하게 받겠습니다마는 조금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文洙委員**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樂冀** 金文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장을 제외한 산하 기관장님들은 직장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委員長 劉容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朴洋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아까 오전질의 때 申溪輪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을 오후회의 속개하기 전까지 申 위원에게 드리고 전 위원들한테 드리라고 했는데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질의해 주세요.

○**朴洋洙委員** 朴洋洙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혹시 빠뜨린 부분만 보충질의 형식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월12일 이후 민주노총 연대파업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아울러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2항 필수공익사업장 파업에 대한 것을 조금 말씀 올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朴仁相 위원님 뿐만 아니라 吳世勳 위원님, 全在姬 위원님께서 평소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비정규직 근로자관계를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께 요청하겠는데 답변할 때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어제 제가 환경부 질의 때 보니까 교수 출신 장관님들께서 마치 학교에서 강의하는 식으로 아주 장황하게…… 전문지식을 자랑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제가 라디오를 들었더니 여당위원이 야당의원 이상으로 공격하더라는 어느 기자 얘기를 듣고 너무 한심했습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군사독재시대도 아니고 권위주의시대도 아닙니다. 여당위원이 여당장관을 보호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또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변자입니다. 그분들의 귀와 입과 눈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미처 얘기하지

못한 것을 저희들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평소 제가 金 장관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6월12일 민주노총 연대파업과 관련하여 우리의 경우 해마다 강경시위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견해에 따라서는 이러한 용어선택에 의견을 제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숙명적으로 그것을 반복하게 된다’는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의 말처럼 과거 영국이나 북부유럽의 강경노조가 국가발전에 얼마나 큰 치명적인 역할을 했는가도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컨대 산업자원부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5월 중순 이후 6월12일까지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액은 1,702억, 수출차질액은 4,075억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와 항공사의 추산에 의하면 항공사 파업시 대한항공은 매일 203억, 아시아나항공은 57억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에 의하면 올해 한국의 노사관계 경쟁력이 조사대상 47개국 중 46위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노사관계의 현실을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작년 기준으로 우리 나라 노조조직률은 10% 정도, 미국은 1997년 기준 14.1%, 일본은 98년 기준 22.4%, 대만은 98년 기준 49%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조직률이 70%대인 500인 이상 대기업을 노조가 분규를 주도하기 때문에 투쟁강도가 높고 대형분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공유된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나라 노사관계가 기존의 비생산적인 틀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보는데 노사관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동부가 취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짚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우선 근로자는 합법파업, 합법투쟁을 하도록 제도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영자는 열린 경영을 해서 근로자에게 회사 사정을 소상히 알리고 주인의식을 심어 주고, 기업경쟁력은 공정하게 나누어 갖는 제도와 관행을 점진적으로 정착시키

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불법투쟁이 문제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朴洋洙委員** 다음에 어제 당정회의에서도 들었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필수공익사업의 축소가 세계적인 추세인데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어느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기존의 필수공익사업장을 검토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번에도 보았듯이 항공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이유는 항공사 파업은 반도체·컴퓨터 부품 등 앞으로 우리 나라의 IT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고 그런 경제의 주력 수출품을 운송하는데 굉장한 타격을 주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현재 항공화물을 이용한 수출은 1일 평균 1억 1,400만달러인데 이중 60%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항공운송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처럼 파업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차질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필수공익사업장의 축소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국제항공운수연합 등의 반발이 있을 것도 예측됩니다마는 이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사실 이번 항공파업을 계기로 항공을 필수공익사업에 넣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항공이 파업하면 대체수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가 파업을 하면 지하철로 갈 수 있습니다마는 항공이 파업하면 대체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대단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론수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여건도 봐야 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논의할 필요가 있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의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朴洋洙委員** 그 전에는 그런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 파업사태를 보고 이제서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까? 그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과거에도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 여론이 더욱 더 부추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朴洋洙委員** 아까 존경하는 朴仁相 위원님께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부분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그리고 평소의 소신을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넘었다는 통계는 말씀드리지 않겠고, 외국 사례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속기록에 남기기로 하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의 출발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 즉 임금실태, 노동형태, 사회안전망 혜택 등 기초조사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전에 내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통계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기본통계는 통계청에서 냅니다. 그리고 좀더 산업현장의 실태를 중심으로 통계를 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노동연구원에 연구작업을 맡겨 놓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들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朴洋洙委員**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은 통계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세밀하게 잘 되어 있는데, 8대 국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쥐약을 살포하기 위해서 ‘전국에 쥐가 몇 마리나 되느냐?’ 물으니까 내가 알기로 ‘사천팔백오십 몇 마리입니다.’ 이렇게 어느 국장이 답변했어요. 그래서 그때 대전출신 야당의 朴 모 의원께서 ‘내가 농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 농장에 쥐가 몇 마리 있는데 그것이 포함되었느냐, 우리 집 천장에 있는 쥐까지 포함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고 질의하니 그 국장이 답변을 못했습니다.

이처럼 통계수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적이고 과학적이고 분명히 납득할 수 있는 통계를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철학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축소판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정치·경제·사회·복지에서 서로 화합하며 소외 당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민주주의입니다.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보호는 바로 사회적 약자 보호이며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토대임을 명심하시고 장관님은 그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容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吳世勳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吳世勳委員 먼저,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전직지원 장려금제도가 신설됩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吳世勳委員 그 지원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시행령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고, 전직지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고용총괄심의관입니다.

전직지원프로그램을 기업이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켜서 현재 차관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심의 중에 있습니다.

○吳世勳委員 지원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지원요건은 기업이 직접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실시하거나 그와 같은 시설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로 되어 있고 특별히 복잡한 요건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고용조정으로 이직예정이거나 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노사간에 합의로 해야 되고,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서 실시해야 되고,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직업상담 등 전문프로그램을 직접 하거나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등의 요건입니다.

○吳世勳委員 제가 이 제도의 취지와 지원요건을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것이, 과연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기업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이냐에 대해서 미리 예상해놓은 수치가 있어요?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저희가 법안을 올릴 때 소요예산을 추계는 합니다마는 솔직히 말씀

드리면,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유럽·일본에 비해서 기업이 근로자를 내보낼 때 사후에 케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고, 아직은 그런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기업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기를 권장하는 가운데 말로만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만듦으로써 그런 관행이 우리 산업사회에 뿌리내렸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합니다.

아직은 우리 사회에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거나 하고 있는 기업이 많지는 않고, 일부 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들만 조사되어 있습니다.

○吳世勳委員 사례를 두세 개 정도 보고서에서 보았는데 전직지원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춘다, 직업상담 등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직접 실시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부용역을 주어서 컨설팅사의 도움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정도를 하려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체가 되어야 할 것이고 영세한 사업체는 꿈도 못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결국 그렇게 큰 기업들만 혜택을 받아가고 조그만 기업들은 꿈도 못 꾸다면 형평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시행 상의 문제가……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그 부분을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외부위탁제도를 생각한 것입니다.

○吳世勳委員 외부위탁할 수 있는 컨설팅기관이 국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시장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외국인 투자업체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世勳委員 저희가 알아보니까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16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 자체 내에서 해결하기도 힘들고 컨설팅회사도 그나마 수도권에만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도를 만들어놓고 일부 대기업에서나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데요.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와같은 관행이 우리 사회에 전혀 생겨나고 있지 않는데, 저희가 제도를 만듦으로써 촉발이 되어서 시장도 점점 커지고 동시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하려고 하는 회사가 생기면 컨설팅회사도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해본다는 뜻입니다. 제도를 운용하면서 보완해야 할

점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吳世勳委員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만들 때부터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하나 문제점은 돈이 나가는 사업에는 어디든지 있기 마련입니다마는 전직지원비용을 과다계상한다거나 아니면 서로 공모를 해서 못 받을 것을 받아간다거나에 대해서 사후에 부정수급 시 반환하고 추가징수하고 고발조치하는 것이 들어 있기는 한데 이것은 사후 처벌이고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勞働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제도 설계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분명히 우려된다고 모두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뜩이나 기업들도 하기 싫어하고 시장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저런 규제를 집어넣게 되면 실질적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고,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좀 냈습니다. 일단 해보면서 그런 규제들이 필요하다면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吳世勳委員 그런 점에 대해서 사전에 문제의식은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계 쪽의 지적으로, 기업이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보다 해고에 따른 비용부담이 적다고 판단할 경우에 고용유지와 해고회피를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고 이 제도를 지나치게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사전에 감안해서 하려면 지원규모나 지원액수를 잘 조절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勞働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지원액수도 당사자들 간에 컨설팅업체나 기업과 합의된 액수를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한도를 두었고, 협의 과정에서 노동계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는 근로자들이 진정으로 받기를 원할 때만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달리 노사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하겠다고 해서 노동계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었고, 또 노동계에 집중적으로 얘기한 것은 이 제도가 있다고 해서 해고회피노력을 조금만 해도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거나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 없고 노사간 협의, 공정한 기준도 만들고 해고대상도 다 선정된 이후에 그런 조건을 다 갖추면 그러면 그냥 내보낼 것이냐 거

기다 플러스 알파를 보태서 보낼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말로 설득이 되었고 어느 정도 양해가 되었습니다.

○吳世勳委員 좋습니다. 2000년 한 해 동안 상시근로자 500인 미만 사업장이 납부한 연간 보험료 총액이 1조1,388억원으로 전체 보험료수입 2조570억원 중 56%를 차지합니다.

내가 왜 이 통계수치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직지원 장려금제도가 제 예상컨대는 일부 대기업이나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만 편중된다는 것을 가정해보면 이렇게 일정규모 미만, 500인 미만 사업장이면 작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사업장도 똑같이 돈을 내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니 만큼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노동부에서 좀더 노력할 부분이 있다, 전직지원 모델 같은 것을 미리 만들어서 영세한 사업장들은 보나마나 자체개발할 여력이 없을 테니까 그런 것을 미리 보급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해야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노동부에서 시행령을 만들려면 지금쯤 전직지원 모델을 미리 만들어놔야 하는데 저는 아직 생소하기 때문에 상상이 안 가거든요.

○勞働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다음 주 중에 국무회의에 통과될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다 준비하고 있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언론에 발표와 동시에 소책자를 비롯해서 대량 홍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吳世勳委員 전직지원 모델이 있습니까?

○勞働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그간에 수많은 성공 사례들, 그런 모델이 다 있습니다.

○吳世勳委員 준비된 것이 있으면 나중에 보내주십시오.

○勞働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예.

○吳世勳委員 그 다음에 여기에 창업정보나 창업지원서비스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勞働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그렇습니다.

○吳世勳委員 알겠습니다.

시행 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가위탁 사업에 대해서 고용보험료 징수하는 문제인데 한국부인회에서 아마 1999년1월15일부터 그해 말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한 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후에 이 근로복지공단 서울 서부지사

가 고용보험적용 누락사실을 알게 되어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미납되니까 작년 8월에 한국부인회 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취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고용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고 하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시행및운용지침 상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라고 되어 있나요?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 국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99년도에는 미처 저희들이 지침에다가 반영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각 부서에 알려주지 못했고 2000년과 2001년에는 그와 같은 지침을 반영하도록 저희 각 부서에 통고를 했습니다.

○**吳世勳委員** 99년도에는 지침에 들어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한국부인회 측이 잔여 예산을 반납해버렸다면서요?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예.

○**吳世勳委員** 알았다면 내부 반납을 했을 텐데 몰라서 그냥 반납했고, 그리고 지금 노동부 고용정책실 산하에 공공근로사업과 고용보험사업 실무부서가 함께 있습니까?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예, 그렇습니다.

○**吳世勳委員** 사전에 서로 의견이나 정보가 전달 되었으면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반영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당시에 그렇지 못했었고……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99년도에는 아마 두 개 국으로 나누어져있어서 그랬던 모양입니다.

○**吳世勳委員** 그리고 99년 당시에 정부로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위탁 수행한 단체가 11개 민간단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고용보험료를 자진 납부한 단체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단체는 모두 보험료를 안 냈다면서요?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예, 그렇습니다.

○**吳世勳委員** 그리고 고용보험법시행령 상에 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고용보험료가 면제가 됩니까?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우여곡절 끝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도 고용보험에 적용이 되도록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다가 다시 또 2000년2월에 그것이 적용 제외로 빠지는 제도의 변천이 있었습니다.

○**吳世勳委員**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보

면 지금 압류까지 된 상황은 당사자가 억울하게 생각할만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사자로서는 다소 정부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또 정부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돈을 징수해야 되는 근로복지공단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법대로 해야 되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저간의 그와 같은 배경이 있든 어쨌든간에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리 노동부 쪽에서 관련부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와 같은 예산을 다시 정산해 가지고 되돌려 주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吳世勳委員** 그것이 가능한가요?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간단치는 않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일 전부터 이런 문제를 제가 알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딱 부러진 대안은 없습니다마는 가능한 방안은 그와 같이 하는 것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부처간에 협의를 해보고 제가 지혜를 좀 짜낸 다음에 위원님한테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吳世勳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수고하셨습니다.

金晟祚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晟祚委員** 金晟祚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朴洋洙 위원님께서 항공사에 대해서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넣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으니까 장관께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개인적 생각도 그렇다고 대답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개인적 생각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金晟祚委員** 신중을 기할 개인적 입장이 개재될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필수공익사업장이란 어떤어떤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필수공익사업장은 법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사업장의 성격 규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장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대체교통수단이 없으므로 이것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들어가야 한다’ 라는 생각도 합리화 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셨단 말입니다. 대체수단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거기에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항공은 지금 현재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그런데 장관께서는 답변에 ‘대체교통수단이 없으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항상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정부에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집행하지 아니하고 여론이 이렇게 가면 그렇게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가고 그렇게 정부가 흔들리니까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르는 것이 맞겠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당연히 법과 원칙과 아울러 민주주의는 여론도 또 존중해야 됩니다.

○**金晟祚委員** 제가 생각하건대 필수공익사업장에 항공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법 정신, 법 원칙에 합당하다고 개인적, 상식적으로 생각됩니다. 정책이 여론에 너무 왔다갔다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노동부장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고하셔서 민주노총 총파업이 어느 정도 수습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총파업을 빨리 마무리시키고, 재발을 방지하고 원인을 분석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도 민주노총이 왜 전국적 총파업을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민주노총은 표면상 내건 투쟁목적이 구조조정 중지, 해고철회, 비정규직, 근로시간 단축, 모성보호 이런 등에 대한 제도개선 또 하나는 노동운동과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보안법 철폐 이런 등을 내걸고 이번에 파업을 했습니다.

사업장 레벨에서는 임금, 단협 이런 것이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한국노총도 사업장별로 민주노총 사업장들과 주변환경이 크게 차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단위사업장들이 총 연합해서 총파업을 한 것은 장관님께서 파악한 것도 많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정부가 들어서서 민주노총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은 하더라도 끌어들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느끼는 어떤 정치적 홀대라고 할까,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총파업으로 가는 원인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 한국노총 단식농성할 때 가본 적이 있습니다. 주택은행과 국민은행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노조위원장 외 간부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역대 정권 중에 이 정권만큼 노총간부들이나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또 채널을 확보하지 않은 곳은 없었다…… 많은 의원들이 같이 갔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노총이 한국노총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떤 정치적 홀대,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수그러들고 있지만 이것은 잠재되어 있고 더욱 더 폭력적으로 혹은 더 강하게 폭발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고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분들이 노사정위원회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혹시 그럴 계획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 역대 정권 중에서 노동계에 가장 따뜻한 배려를 해 준 정권이 국민의 정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 정부 들어서서 고용보험법을 비롯해서 근로자 관계의 사회안전망이 확장되었다 또 민주노총 전교조가 합법화된 것도 이 정권에 들어서서 되었고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한 것도 이 정권에 들어서서 되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노동3권의 신장이라는 것은 이 정권에 들어서서 아주 비약적으로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대단히 배려적입니다.

다만 IMF 이후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실직의 아픔을 본의 아니게 안겨 주는 것에서 마찰이 조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루탄도 쏘지 않으면서 민주적으로 배려해왔다고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이나 근로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와서 대화를 통해 하도록 민주노총이 제기하고 한국노총이 제기하는 그 의제들을 우선적으로 다루겠습니다.

○**金晟祚委員** 그분들을 대화의 상대로 끌어들이고 진정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晟祚委員** 지금 민주노총이 수습국면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아까 장관께서 파악하고 계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연대파업으로 몰고 간 요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구조조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민주노총에서는 불평,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던 여건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도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경우에 사용자와 노동자간에 협의가 필요합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구조조정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그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드리겠고 근로자에 대한 희생을 최소화하고 또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근로자,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 부처별로 특히 공기업 구조조정을 할 경우에는 전문위원, 노사전문가한테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 컨설팅 제도도 도입하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구조조정을 할 때 혹은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인원을 해고하는 것 또 분사를 하는 것, 사업만 일부 분리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노사간의 협의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합의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구조조정은 협의를 통해서 합니다.

○**金晟祚委員** 그러니까 협상에 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협상이라기보다는 노조의 의견수렴을 해서 원만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민주노총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합, 효성, 태광산업의 구조조정 현황과 노조의 참여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합 계열관계사의 매각을 노조의 참가 없이 일방시행했고 업종, 생산 품목변경 일방시행, 팀제 및 조직개편 사후통보, 기업소유 구조변동 사후통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나 국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주었던 효성 계열관계사 매각 사후통보, 인수합병 사후통보, 품목변경 일방시행, 분사·사업부제 일방시행, 팀제 및 조직개편 사후통보, 이런 식으로 태광산업까지 다 합쳐서 협의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강행하니까 당연히 그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협의하지 말고 법을 정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가 어떤 기관에 의해서 인정되었을 때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데모도 안 하고 덜 서운할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써서는 안 되겠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일방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金晟祚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구조조정을 할 때 한번도 근로자측과 협의나 합의가 된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노동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 일이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경영상 긴박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 긴박한 경우도 정말 절실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그 사정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金晟祚委員** 효성의 경우에 6월1일 장관님이 갔다오셨고 6월4일 노동부 간부 한 분이 가서서 노사합의 중재 포기를 선언하셨습니까? 도저히 안 된다, 노사양간 협상에 맡기겠다 이렇게 하고 지속적인 중재에 대한 포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勞動部長官 金浩鎭** 아닙니다. 지금도 중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재를 더 효과적으로, 다시 말해서 노사협상을 좀더 촉구하기 위한 전략적인 제스처로 '우리는 그만두고 가겠다, 당신들끼리 하라'는 수가 더러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더러 있더라도 그것이 공식화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 사업장 말고 다른 사업장들이 들었을 때는 노동부를 그렇게나 신뢰하고 있는

때 때에 따라서는 중재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절박하게 와닿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労働部長官 金浩鎮** 그것은 포기를 위한 포기가 아니라 더 촉구하기 위한, 중재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金晟祚委員** 그렇다 할지라도 근로자에게 중재를 포기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들에게 그래도 노동부가 당신들의 편이라는 것이 머리에 박힐 수 있도록 즐기치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労働部長官 金浩鎮**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金晟祚委員**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불신감 그리고 노동부가 아까 말씀하신 구조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협의도 안 되고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다는 마음 그리고 공권력들도 와서 심지어 114노조나 여러 가지 노조운동 중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출동해 있는 여경에게 좀 구해달라고 해도 방관하고 있으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민주노총 그분들을 갈 곳 없는 곳으로 자꾸 몰아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는 6월4일 노동부에서 효성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월5일 새벽에 바로 공권력이 투입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근로자들이 어떻게 노동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적어도 노동부장관이 공권력 투입은 없다고 얘기하면 공권력 투입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그날 공권력 투입은 더 이상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労働部長官 金浩鎮** 제가 단정적으로 공권력 투입은 없다고 얘기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항상 공권력 투입에 의한 문제해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으로 얘기합니다.

○**金晟祚委員**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여기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때 묻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金武星 위원 질의하세요.

○**金武星委員** 서면질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金晟祚 위원님의 질의에 장관께서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労働部長官 金浩鎮** 글썄요. 제가 단정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겠다 혹은 하겠다는 표현은 하

지 않습니다. 다만……

○**金武星委員** 불법파업 현장에 기업주로부터 공권력 투입요청을 받았을 때 당연히 공권력을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労働部長官 金浩鎮** 불법파업 등 폭력에 의한 행위는 당연히 법에 저촉되고 따라서 법에서 정한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金武星委員** 효성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입니까, 아닙니까?

○**労働部長官 金浩鎮** 저도 그때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武星委員** 존경하는 장관님, 저는 과거에 장관님께서 학자이셨을 때 정말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지금 장관님 답변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상황을 잘 모른다는 말씀이 어떻게 주무장관의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울산의 효성사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労働部長官 金浩鎮** 아니, 울산사태야 잘 알지요.

○**金武星委員** 잘 하시면서 왜 잘 모른다고 해요?

○**労働部長官 金浩鎮** 그렇지만 그것이 경찰을 투입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그 시점에서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金武星委員** 지금은 그 시점이 지나서 그때의 상태를 묻는 것 아닙니까?

○**労働部長官 金浩鎮** 지금 시점에서는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金武星委員** 효성사태가 언제 있었던 일인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해서 사람 기를 채웁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데 국회에 와서 답변하시는 장관이 잘 모르겠다는 말을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십시오.

효성 같은 경우에는 자체 노조의 찬반투표에 의해서 파업을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산별노조가 거기 들어가서 공장의 불을 끄고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서 불법파업을 한 것 아닙니까?

○**労働部長官 金浩鎮** 그렇습니다.

○**金武星委員** 그래서 사측에서 어떠한 요청을 했습니까?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였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金武星委員** 그러면 그 상황에서 공권력을 투입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공권력 투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판단은 사측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金武星委員** 그것은 일반적인 말씀이고 제가 울산 효성공장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투입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권력이 들어간 것이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렇습니다.

○**金武星委員** 그러면 아까 했던 질의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金晟祚 위원께서 질의할 때 공권력 투입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일이 없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金武星委員** 장관은 어떤 경우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金武星委員** 그 다음에 5월31일 段炳浩의 기자회견으로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민노총이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 이후의 장관 일정을 보고 있습니다.

6월1일에 효성의 노사대표를 울산에서 면담하시고 여천에서 NCC 노사대표를 면담하신 것, 그 이외에 장관이 이 엄청난 대란을 몰고 올 파업을 막기 위한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전에 대우자동차 문제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산업평화입니다. IMF 이후에 우리 경제가 다시 소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했습니다마는 전 국민적인 근검절약과 구조조정, 이것은 철저히 구조조정 하지 않으면 경제가 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장관께서 좀더 그야말로 팔을 걷어붙이고 현장에 가서 강경한 노조, 물론 잘못된 사측에 대해서도 호소를 하고 경제회생을 위해 몸으로 부딪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 일정을 보면 그러한 노력이 전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6월11일

에 대통령을 모시고 ASE 코리아라는 곳을 방문하셨는데 어떤 의도로 여기에 가셨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ASE 코리아는 외투기업이고 외투기업으로서 노사협력관계가 아주 모범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일정은 약 한 달 전에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행사를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주무장관으로서 수행해야만 마땅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일면으로 보면 한쪽에서는 노사분규로 공멸하겠다는 뜻으로 싸움질을 하는데 우수한 기업체가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 노사관계를 안정국면으로 전환시키는 효과도 있고 세 번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사가 협력해서 흑자를 거두는 기업을 최고지도자와 주무장관이 가서 따뜻하게 격려하는 것은 정말 눈물겨운 애정을 담은 일이라고 해서 갔습니다.

(劉容泰 위원장, 金樂翼 간사와 사회교대)

○**金武星委員** 민노총처럼 불법파업을 일삼는 과격한 노조와 대비해서 이렇게 노사간에 서로 화합이 잘 되어서 잘 돌아가는 공장을 국민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대비하는 효과를 얻기 위한 기획이었다는 말씀이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런 효과도 있고 그날 아침 새벽에 관계장관 회의를 해서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다각도로 노력을 했으며 그날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건 있었습니다.

○**金武星委員**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질의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방금 장관의 답변 중에 한 달 전에 잡혀진 일정이 어떻게 취소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 달 전에 대통령 일정이 잡혔다 하더라도 한참 가뭄이 심각한 이때에 그리고 민노총의 파업으로 상당히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현장에 가는 것보다는 민노총 파업현장에 가서 그들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몸으로 부딪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판단되었다면 비록 대통령의 일정이라도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서 ‘지금 이런 데 가는 것보다는 파업현장에 달려가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하고 취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래서 13일은 양수기를 가지고 농촌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취소하고 KAL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金武星委員** 그런데 ASE 코리아를 방문하신 것이 TV 뉴스에 몇 초간 방영되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초는 재지 않았습시다만 그

날 뉴스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武星委員** 몇 초간 방영되었는지 아시는 분이 나 담당자는 답변해 보십시오.

방영이 되었습니까? 어느 방송국에서 방영되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KBS에 나왔습니다.

○**金武星委員** KBS에서만 나왔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KBS, YTN 같은 데 나왔겠지요.

○**金武星委員** YTN은 하루종일 방영하니까 작은 기사도 나가니까 나왔을 것이고…… KBS에서만 나왔습니까?

공보관! 이리 나와 보세요.

안 나왔어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공보관은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金武星委員** 이 이벤트의 주무국장이 누구입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安鍾根** 노정국장입니다.

○**金武星委員** KBS에서만 나왔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安鍾根** YTN에서 보았고 KBS에서는 30초 가량 방송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金武星委員** MBC, SBS에서 방송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安鍾根** 그것을 집에서는 못 보았습니다마는 대개 모든 방송에 나왔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제가 알기로는 각 방송사에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武星委員** 강조를 더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12일부터 파업이 된다, 파업 하루 전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목적으로 대통령을 모시고 이러한 행사를 했는데 장관께서 그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대비되는 행사를 가진다면 과연 이것이 국민에게 잘 홍보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 관심을 가지고 KBS는 몇 초, MBC는 몇 초, SBS에서는 몇 초 나왔다는 답변이 바로 나와야지, 담당국장이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이 나와서 되겠어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아마 정신이 없어서 체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金武星委員** 정신이 없으면 장관 그만뒤요! 싫은 소리는 하기 싫은데……

그러면 이 행사가 끝나고 한화그룹의 부회장과 고 점심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한화그룹 부회장과 63빌딩 중국집에서 만나서 여천 NCC 관계로 논의를 했습니다.

○**金武星委員** 여천 NCC 때문에 만났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렇습니다.

○**金武星委員** 제가 장관의 5월1일부터 6월14일까지의 일정을 죽 보고 있습니다마는 민노총의 총파업의 시기가 결정될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과 그 후까지 죽 보면 물론 장관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산별연맹 위원장님과도 만나고 경제 5단체장 간담회, 기자회견 등의 일정이 있는데 좀더 현장에 가서 부딪치는 모습이 부족하고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와 견해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산업현장에 좀더 몸으로 부딪치는 모습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자시절에 존경했던 장관께 제가 다소 심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사람을 화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신경을 쓰시면서 필요 없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아까는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데 이런 이벤트를 담당국장이 MBC나 SBS에서 방송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전 국민이 이 가뭄에 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 정말 불안해하고 외국인 투자가 주춤거리는 상황인데 그 정도밖에 체크가 안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참고로 13일에는 중대 현장에 갔고 지금 아주 행정공백이 될 정도로 현장에 너무 가서 걱정인데……

○**委員長代理 金樂翼** 金武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浩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浩雄委員** 李浩雄 위원입니다.

최근 일련의 파업상황에 처해서 장관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발로 뛰어 다니면서 노사 양측을 중재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노동부 파업대책은 합법적인 노동쟁의는 적극 보호하되 불법행위는 강력 대응한다는 기조 하에

민주노총 지도부 설득과 특별기동반 구성, 언론을 통한 파업자제 호소, 제도개선 사항의 노·사·정 논의 본격화 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은 지난해에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지난해에 없었던 새로운 대책이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비슷합니다.

○**李浩雄委員** 똑같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李浩雄委員** 장관께서 연대파업 전날인 지난 11일자 문화일보에 “노사 상생의 길 찾아야”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한 것을 보았는데 쓰신 일이 있으시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썼습니다.

○**李浩雄委員** 그 내용에 보면 적자기업의 고임금 근로자들이 임금투쟁을 벌인다고 비판하고 이로 인해서 97년 한국의 근로손실이 일본의 16배를 상회하고 스위스의 한 연구소가 올해 발표한 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이 조사대상 47개국 중 46위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쓰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그렇습니다.

○**李浩雄委員** 본 위원은 장관의 기고문을 읽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장관이 말씀하신 것이 모두 옳다고 해도 노동계가 파업을 앞둔 아주 예민한 시기에 향후 노사관계를 객관적으로 중재하고 노동행정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신중한 태도였는지, 그 시기가 시의적절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부장관은 정부부처 어느 장관보다도 근로자들을 이해하고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신해야 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글은 근로자들의 감정을 악화시켜서 자칫 중재를 어렵게 할 소지를 안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중재자의 역할이 흔들리지 않도록 좀더 신중한 자세를 당부드립니다. 이로 인해 노사간의 문제가 노정간의 대립으로 확대될 우려도 있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은 노사관계에 관련해 매년 되풀이되는 임기응변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파업과 관련해 노사정위원회가 수행한 역할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노사정위가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장관께서

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樂翼 간사, 劉容泰 위원장과 사회교대)

○**勞動部長官 金浩鎭** 민주노총이 들어오지 않아서 논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여러 가지 안건들이 노사간의 의견대립으로 진전을 보지 못함에 따른 평가라고 봅니다.

○**李浩雄委員** 민노총이 노사정위에 가입하지 않아서 민노총이 파업활동에 직접 관계하고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사정위는 제도개선과 관련된 활동부분만 한정하고 개별노사관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원칙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노사정위는 행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사업장의 문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합의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浩雄委員**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 노사정위 구성 성격상 개별사업장에는 관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군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렇습니다.

○**李浩雄委員** 그러니까 결국 이번 파업사태 같은 경우는 노사정위에서는 실제로 원칙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조건에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노사정위에서 하자면 노·사·정이 모여서 회의하고 합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李浩雄委員** 본 위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누차 지적했듯이 노사정위의 출범은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된 주요 노동정책 중에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사정위가 노·사·정 세 주체의 일종의 수단화와 방기 속에서 무기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부는 자신이 처리하기 힘들고 사회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각종 사안을 떠넘기는 창구로 노사정위를 수단화했습니다. 재계는 자신의 이해와 이익에 상반되는 각종 문제를 지연시키는 창구로서 노사정위를 활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계는 민주노총처럼 노사정위 참여 여부를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노·사·정 세 주체에 의해 노사정위의 실효성은 저하되었고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도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렇습니다.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李浩雄委員 그렇지요? 본 위원은 이에 따라서 이번 민주노총 파업사태와 같은 개별적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사정위가 대화창구로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독일의 노·사·정 합의모형인 노동직업훈련 그리고 경쟁력을위한연대처럼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를 협의기구로 전환하고 실질적인 대표를 국무총리로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본 위원의 제안을 참고로 해서 노사정위의 위상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대안이 나오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 보여지듯이 현재 노사관계 안정을 저해하는 것은 사용자측의 경영정보 미공개와 근로자측의 회사경영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 노동전문가들은 노사간의 신뢰구축을 기반으로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려면 무엇보다도 그동안 노동부에서 추진해 왔던 경영정보 공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는 점과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지금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 문제는 참여적 경영, 생산활동의 경영은 바람직 하지만 그것은 제한적인 참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李浩雄委員 경영정보 공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노동부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임시·일용근로자 등 비정규 근로자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서 2001년4월 현재 근로자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은 누차 얘기된 바 있고 이에 따라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근로자대책특위가 설치되어서 이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대책이 논의

된다고 하니까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비정규 근로자도 많은 업종과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생계와 연계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장에 대한 일회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부 직제상 근로감독관의 총정원과 현재 근무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실무자가 잘 아시겠지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白日天 근로기준국장입니다.

현재 근로감독관 총정원은 1,055명인데 현원은 902명입니다. 한 150명 부족한 것입니다.

○李浩雄委員 왜 그렇습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白日天 이것은 저희가 행자부에 충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정부 인력수급상 채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李浩雄委員 근로감독관이 이렇게 부족한 실정인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인력으로 이에 대한 감독이 가능합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白日天 현재 상당히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李浩雄委員 이렇게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기존의 근로기준법 적용대상도 감독하고 일하기가 충분치 않은데 여기에다가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감독까지 부과되면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白日天 그래도 저희가 5월과 6월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노무관리 또 현장점검을 계획해 가지고 현재 약 700개소에 대해서 이미 실시했고 앞으로 6월 말까지 500개소를 마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점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李浩雄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 가장 최선은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지만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白日天 예, 그렇습니다.

○李浩雄委員 당장 가능하지 않다면 우선 임시방편으로라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처럼 명예근로감독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운영방안에 대해서

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근로감독관으로 있다가 퇴임한 분들을 명예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의 방안은 일용근로자가 많은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각 지역에 있는 건설 일용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노조관계자를 명예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명예근로감독관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이 어느 정도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李浩雄委員** 검토하고 있고 시험은 한 번 해봤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아직 안 해봤습니다.

○**李浩雄委員**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물론 근본적으로는 부족한 감독관을 더 충원할 수 있는 제도를 원천적으로 마련해야 되겠지만 그 방법도 시험을 해서 가지고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감안하면서 적극적으로 서둘러 봤으면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질의하신 분들이 전국건설운송노조파업 관련해서 많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로서 파업 66일째를 맞고 있고 또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23일째 노숙투쟁을 전개하고 있지요? 장관께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건설운송노조 간부들을 면담하고 그 자리에서 노조의 합법성과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한편 노조간부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사용자들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조간부들과 면담 이후에 취해진 가시적 조치가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벌써 54건을 송치했습니다.

○**李浩雄委員**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유진개발 대표이사이자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인 유재필 씨의 경우 자사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해고와 폭력을 일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이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그렇습니다.

○**李浩雄委員** 특히 연합회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소속회원사들에게 노조를 인정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심지어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은 업체에 대해서는 시멘트생산업체를 통해서 원자재 투입을 방해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알고 있습니다.

○**李浩雄委員** 유재필 씨에 대한 근로자들의 고소·고발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李浩雄委員**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검찰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李浩雄委員** 그 처리결과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알겠습니다.

○**李浩雄委員** 이처럼 유재필 회장으로 인해서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노동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검찰에다가 벌써 송치를 했습니다.

○**李浩雄委員** 검찰에서는 어떤 조치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검찰에서는 아직 조치가 안 나왔습니다.

○**李浩雄委員** 언제쯤 검찰에 고발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6월9일에 했습니다.

○**李浩雄委員** 며칠 안 되었군요.

장관께서는 근로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근로자들로부터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노동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원활한 노동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장관의 균형있는 시각과 일처리를 잘하시리라 믿고 부탁드립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균형적으로 하겠습니다.

○**李浩雄委員** 마지막으로 실업자대부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실업자힘내라대부사업을 비롯해서 가계안정자금대부사업 장기실업자창업지원사업, 실직여성가장창업지원사업 등 각종 대부사업이 시행되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들 사업의 대부신청자 대비 대부율을 분석해 보니까 98년에 71.5%, 99년에 80.9%, 2000년 71.7%, 2001년은 65.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대부신청자 10명중에 3명 내지 4명은 대부대행은행의 담보나 보증인 요구 때

문에 대부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저소득층 실업자의 생계지원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지만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를 해결하려면 근로자신용보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된 근로자복지기본법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되어 저소득층 실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생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동의하십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그렇습니다.

○**李浩雄委員** 그리고 지난해부터 상황이 시작되었을 텐데 상황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알겠습니다.

○**李浩雄委員** 또한 일부에서는 저소득층 실업자들의 빈곤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어 상황할 여력이 전혀 없는 실업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의 대부분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또한 이들을 보증 했던 저소득층 보증인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부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다른 질의들과 함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알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1차 질의를 끝내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해야 하는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를 하시기 전에 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장으로서 평소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위원들의 질의와 정부측 답변에서 다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 우회적인 답변으로 인해서 가끔 성실성에 대한 문제가 위원들끼리 만나서 토론할 때 늘 제기되곤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성실답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분석할 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장관께서 모두에 유인물을 쪽 돌리시고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노동부장관이하 차관, 기획관리실장 주관 하에 현장에 나가서 24시간 사태수습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동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상황실을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

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그와 같은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사회불안, 불법과업,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는 상황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정부측에서는 최소한도 모두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경험과 인력, 장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했지만 역시 상황이 쉽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기 좋은 얘기로 ‘노동부가 최선을 다하는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안 나타나서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하는 겸손하고 겸허한 모두의 정부측 인사가 있었다고 하면 오늘 위원님들의 본질의 톤이 낮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향후 정부측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실 때 그런 것들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를 쭉 보면 행정지도, 노동부가 한 여러 가지 행적들, 최근 주요 분규와 관련된 지도내용이 나오는데 노동부가 수고 많이 한 것을 잘 압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형식의 보고가 잘못하여 어떻게 비화될 수 있느냐, 노동부 전 사무관급 이상의 업무일지를 복사해서 국회에 보고하지 이렇게 하느냐 하는 역설적인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를 조정하는 지혜와 노력이 상호간 필요하다는 지적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까 장관께서 위원들 질의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대한항공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장관도 집에 못 들어가는 고생을 하고 또 산곡성당에 대우근로자들이 모였을 때 생명보험을 들 정도로 위험을 느끼면서 현장에 간 경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관께서는 12월22일부터 27일까지 해외여행을 하셨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출장을 갔었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었느냐 하면 한국통신의 파업기간입니다. 명동성당에서 철야하면서 한국통신이 파업하는 기간에 장관께서 해외여행을 하셨고, 또 27일에 종결은 됐지만 금융노조가 일산에서 비닐천막을 치고 난리쳤던 상황입니다. 그럴 때 장관께서 해외여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金武星 위원께서 장관께 조금 톤이 높은 질의를 드렸습시다마는 바로 그런 것들이 장관께서 집에 못 들어가시면서 고생하신 것을 이쪽에서 수고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답변으로

인해서 수고한 것이 많이 퇴색된다고 할까 충분한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향후 많이 참작해서 답변에 임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5월30일부로 노사협력관을 교체하셨지요? 그런데 새로운 노사협력관이 어느 정도 유능한 직원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은 5월30일이면 이번에 벌어진 대한항공이나 서울대학병원 등 분규에 휘말리고 있는 사업장들 또 그 당시 효성중공업이나 여천 NCC가 소용돌이치는 상황인데 그 노조들이 전부 민노총입니다. 그런데 민노총을 담당하고 있는 노사협력관을 그 와중에서 교체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인사를 보강하여 모자라는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그 문제를 수습하는데 가일층 노력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텐데 그 와중에서 노사협력관을 전격적으로 5월30일 교체했다고 하는 것은…… 전임자가 무능해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신입 노사협력관으로 부임한 사람이 전임자에 비해서 민노총을 월등히 다룰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직원이라서 교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밖에 비치는 민노총의 반응 등은 ‘우리보고 민노총과의 대화를 끊고 파업하라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공식적인 항의를 할 정도였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또 아까 申溪輪 위원이나 金晟祚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민노총을 합법단체로 양성화하고 여러 가지 법적 뒷받침과 지원을 하면서도 민노총에 대한 사랑과 지도하려는 의지가 없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적어도 노동부장관이 민노총의 단병호 위원장과 만나서 적어도 이번의 양대 항공사 파업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파업이 벌어지고 있는 민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을 진정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흔적이 하나도 안 보여요. 단병호 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鎮** 전화를 몇 번 했었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전화 말고 직접 만나서…… 아까 金武星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전화로 할 상황이냐, 직접 만나서 답판을 지을 상황이냐…… 현장에 노동부의 최고 책임자가 뛰어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행동했는지 자꾸 여기서 논의가 되는데 어쨌든 전화로 말씀하셨다는 것도 노력은 노력이지만 민노총 단병호 위원장과 한 번도 대화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이번 파업

을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하나의 실증이라는 것입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鎮** 만나자는 제의를 수 차례 했습니다마는 단병호 위원장의 투쟁전략상 자기네들이 피하는 입장이었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그런 경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정부측이 민노총과 대화해서 분규를 수습하려는 의지가 약했었다는 이야기가 일반적이다, 노동부에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몰라도 외곽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온다는 것을 노동부 쪽에서는 잘 아셔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번과 같은 사태를 쭉 경험하면서, 아까 金樂冀 위원과 金晟祚 위원 또 다른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불법파업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 불법파업이 끝나면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 노동조합은 협상을 마무리 지을 때 최종서명 직전에 사업자측에 꼭 고소, 고발된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고소, 고발의 취하와 보상 청구의 취하를 요구합니다.

이런 것들이 관행화됨으로 해서 노사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나중에 그 부작용을 그대로 잉태하고 넘어가는 하나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오늘 제출한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협상의 마무리 과정에서 노조의 요구사항 중에 고소, 고발취하는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공권력이, 법의 엄정한 집행이 그리고 정부의 위상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를 참작하셔서 앞으로 노동조합을 지도하시는데 많은 참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많은 사태들을 경험하면서 다음에는 제2, 제3의 사태를 경험하지 말자 하는 것이 위원들 전체의 요망사항이자 질의였고 정부의 답변도 또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뿐이었지 실제로 그렇겠느냐 하는 것을 엄밀하게 분석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장관께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실 것은 이와 같은 사태를 경험하면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다시 말하면 조합법이나 쟁의조정법 등 노동관계법을 개정 내지는 보완할 필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많은 느낌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까 어느 위원께서는 쟁의조정법상 행정지도가 합법이나 불법이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

데 노동조합은 행정지도가 불법이라고 하고 정부는 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사법부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는 몰라도 과거의 판례로 보나 이번 상황으로 보아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지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법을 개정 내지는 보완할 필요가 있느냐를 포함해서 각종 노동관계법을 급하면 이번 회기에라도,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정기 국회에서 적어도 이러이러한 부분 정도는 개정 내지는 보완해야 향후 노사행정이 제대로 되겠다는 필요성이나 감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働部長官 金浩鎭** 우선 이번 항공과업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사 양측이 지금 있는 법만 엄정하게 지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소, 고발취하라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인데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법의 미비로 인해서 고소, 고발취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세력관계 때문에 고소, 고발취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있는 법을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집행하고 노사가 지켜주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될 것이고, 제가 여기에서 법의 미비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신중히 검토해서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洪思德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洪思德委員** 3분 정도 쓰겠습니다.

먼저 소회를 말하고 정부 역할과 관련해서 꼭 장관이 아니더라도 누가 연구가 있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까지의 노동운동을 보면 대형 사업장의 경우에 결과적으로 주름살을 하청 기업 노동자들에게 미루는 성향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가령 큰 제조회사의 노조가 '임금을 1할 올려다오' 그러면 마치 못해서 올려주고 난 다음에 그 주름살은 하청기업으로 미루어 버려서 하청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은 같은 질 같은 종류의 노동을 하면서도 대체로 모기업 노동자들이 받는 봉급의 60내지 65%밖에 못 받았습시다.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노동자가 노동자를 수탈하는 시스템을 보여주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그런 현상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소위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들은 마구 투쟁하고 요구해서 자기들 월급을 올려놓는데 경영진들은 그 주름살을 아무 방어능력이 없고 전체 노동자의 58%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한테 미루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보고서 낸 것을 보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 5할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노동운동은 본질적으로 도덕운동이어야 됩니다. 나는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마음 한편으로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관 또는 연구가 있는 분한테 물어보는 것은 이렇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는 하청기업의 근로자들 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정부는 공정한 조정자로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만약 모자라는 바가 있다면 마음 속으로 또는 연구하기를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勞働部長官 金浩鎭** 우선 劉容泰 위원장님께서도 고칠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칠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비정규직 근로자문 제입니다.

임금차별도 심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불안이 심해서 이 문제를 저희가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위원회에 비정형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도 만들었고 노사협력관을 하던 白 국장을 근로기준국장으로 해서 다시 비정형근로자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비정형근로자문제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洪思德委員** 예컨대 조직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좋은 협상기술을 발휘해서 자기들 월급을 가령 100원을 올려 받았을 때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같은 질의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한테 몇 %까지는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연동이라도 해야 이 사람들이 보호되지 이미 말을 안해서 그렇지 우리가 서로 아는 바 아닙니까? 조직노동자들 임금 올려주고 난 다음에는 그 주름살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넘기고 가뜩이나 적게 받는 가여운 사람들, 그리고 하청기업 노동자들에게 넘기는 것 아닙니까? 나는 조직 노동자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시다마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勞働部長官 金浩鎭**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처

럼 동일 노동에 근무하면서 상용자와 비상용자가 엄청나게 차별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평생 비정규직의 신세에서 누구나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데 계속 반복계약이 되면서 비정규직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는 캐디나 학습지교사같은 특수 고용자들의 문제, 또 레미콘 기사도 비슷합니다마는 이런 사람들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저희가 아주 고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이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의 질의순서대로 朴仁相 위원께서 먼저 하십시오.

○**朴仁相委員** 우선 장관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화번호부 노동조합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朴仁相委員** 지금 노총에서 농성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安鍾根** 노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부당노동행위 관련 부분입니다. 2월2일 서울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들어왔었는데 현재 노조위원장측에서 연기신청을 해서 연기되고 있고, 4월11일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했는데 역시 노조위원장의 연기신청에 따라 지금 연기된 상태이고, 5월30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6월20일 출석요구를 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朴仁相委員** 지금 협상이 잘 안 됩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安鍾根** 잘 안되고 있고, 전화번호부 쪽의 부당해고문제가 좀 미묘한 문제입니다. 이상한 사진이 들어와서 회사에서 해고되고 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노동부에서 사실 다루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朴仁相委員** 노사문제를 노동부가 다루지 못하면 법률적으로 해야 됩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安鍾根** 노사문제라기 보다 개인의 품위문제, 그 회사의 품위문제로 해고된 사건이거든요. 그 부분을 회사측에서 노조위원장을 해고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했다는 혐의가 있다든가 적발이 된 것은 저희가 경찰과 공조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朴仁相委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판결문 가지고 계시지요?

○**中央勞動委員長 林鍾律** 예.

○**朴仁相委員** 이것은 대한항공 뿐만 아니고 중노위 결정의 문제점이 우리나라 노동운동에 시사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불법이나 합법이라는 문제를 놓고 아까 金文洙 위원께서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YS정권 때 500 몇 명이 들어갔는데 DJ정권 때는 더 늘어나버렸다, 주로 이것이 작년도 병노련 사건에 연루되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6월8일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문 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위원회는 6월8일 특별조정회의를 개최해서 노사대표를 개별접촉하면서 주장의 불일치사항에 관한 의견조율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노위는 6월8일 노사 양측을 접촉하면서 조정을 했다고 시인했는데 조정하고 있는 중에 같은 날 행정지도를 내렸지요?

○**中央勞動委員長 林鍾律** 예, 그렇습니다.

○**朴仁相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저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中央勞動委員長 林鍾律**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표현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朴仁相委員** 오해의 소지입니까, 주문의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까?

○**中央勞動委員長 林鍾律**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대상에 관해서 조정한 것은 아니고 안전 자체가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견조율을 했던 것인데 마치 조정대상인 임금에 대한 본격 조정이 있었던 것처럼 문안이 작성된 것은 잘못입니다.

○**朴仁相委員** 중노위 결정문을 놓고 변호사모임에서 검토해 보아도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법 제5장에 보면 조정이 개시되면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사자 쌍방의 주장요점을 확인하고 조정안을 작성해야 되는데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

료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中央勞動委員長 林鍾律 그렇습니다.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 노동쟁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이지요.

○朴仁相委員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이 조정 중에 행정지도를 내린 것은 어찌 보면 이 사건을 합법적으로 보기보다는 불법적인 파업으로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과정이다, 지금 변호사모임에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中央勞動委員長 林鍾律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朴仁相委員 이 전문 앞의 문안과 뒤의 문안을 맞추어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자주 이렇게 내리면 결과적으로 중노위의 권한남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래 전부터 나왔고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할 때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중노위 위원장께서 앞으로 상당히 신경을 쓰고, 행정지도를 남발하는 것이 비단 민노총 부분만이 아닙니다.

전반 노동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주어야 되겠다 작년도에 병노련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중노위 결정사항에서, 거기에는 또 일방중재가 있잖아요?

○中央勞動委員長 林鍾律 아닙니다. 병원노련은 직권중재입니다.

○朴仁相委員 직권중재가 있지요? 병노련은 직권중재로 때려버리니까, 직권중재는 양쪽이 안 받으면 불법이니까 또 불법파업이 되어버리지요.

○中央勞動委員長 林鍾律 병원노련은 저희들이 중재재정을 냈는데 양쪽이 안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직권중재에 회부했는데 그러면 15일간 쟁의행위를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파업을 하니까 불법이 되었습니다.

○朴仁相委員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중노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행정지도 남발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차라리 종결하고 결정하면 결정문을 쓰는 게 맞지 같은 날 그렇게 지시해 놓고 같은 날 행정지도를 해버리고 나면 이것은 누구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제가 다른 질의를 하나 할게요.

지금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이 중앙노동위원회 전체 인원에 대해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中央勞動委員長 林鍾律 지노위위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있지요.

○朴仁相委員 전체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

권은 없습니까? 노동부장관님한테 있습니까?

○中央勞動委員長 林鍾律 그렇지요. 6급 이하의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朴仁相委員 6급부터 1급까지는 장관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中央勞動委員長 林鍾律 제가 일부는 추천권을 갖고 있습니다.

○朴仁相委員 추천권이야 장관님이 비토해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적어도 인사권 자체만은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고칠 적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확고부동한 독립성을 유지했을 때 판결을 하더라도……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노동재판소가 없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실상 노동조합이 바라는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위를 최대한 존중해 주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내려주십시오…… 중노위에서 내린 것이 고등법원에 가서 지는 수가 많지요?

○中央勞動委員長 林鍾律 별로 없습니다.

○朴仁相委員 요새는 별로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상당히 잘 하는 겁니다. 옛날에 보면 40%씩 다 저버렸습니다.

○中央勞動委員長 林鍾律 저희들이 지는 것은 10%도 안됩니다.

○朴仁相委員 그러면 요새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노위 결정서 5페이지에 당사자간에 실질적인 교섭이 전혀 행하여지지 못했다는 사실이 적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를 보면 노사 양 당사자간에 합의한 대로 2001년5월14일 임금교섭이 매주 3회, 본교섭 1회, 실무교섭 2회, 정기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놓고 있습니다.

같은 결정서에서 중노위는 사실관계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中央勞動委員長 林鍾律 아닙니다.

형식적으로는 여러 차례 만나서 교섭했지만 교섭대상이 되는 임금에 관해서 실질적인 진전이 전혀 없었다는 거지요.

○朴仁相委員 아까도 임금하고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중노위에서 지적

할 때는 명확하게 해놓아야지요.

○**中央勞動委員長 林鍾律** 저희들은 명확하게 했습니다.

○**朴仁相委員** 그런데 5페이지에서는 당사자간에 실질적인 교섭이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해 놓고 4페이지에서는 또 당사자간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해 놓았어요.

○**中央勞動委員長 林鍾律** 형식적인 교섭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실질적인 교섭이 없었다는 뜻이지요.

○**朴仁相委員** 그래서 5페이지하고 4페이지를 맞추어보면 문맥상 누가 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같은 결정서에서 중노위는 사실관계를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중노위가 대한항공 노조과업을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불법으로 몰아서 정리하겠다 이것은……

○**中央勞動委員長 林鍾律** 그것은 오해의 말씀입니다.

○**朴仁相委員** 그쪽에서 오해라고 하면 오해가 되든지간에 제가 느끼는 감은 그런 방향으로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 특히 변호사들 모임의 시각도 이렇게 유도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中央勞動委員長 林鍾律** 그런 일각의 오해라든지 의견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지도와 관련해서 염려의 말씀과 지적이 계셨는데 이렇게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행법이 엄연히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된 내용이 노동쟁의가 아닌 경우에는 그것을 조정하지 말고 행정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쟁의인 경우에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엄격하게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KAL의 경우에 처음에 조정신청을 했을 때 교섭이 전혀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교섭이 안된 것에 대해서 인천으로 공항을 이전하는 사건과 관련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우리 위원들이 보셨고 게다가 노동조합 쪽에서는 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 운항규정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보충협약은 단체협약에서도 엄연히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치도

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굳이 교섭대상으로, 쟁의대상으로 삼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디까지나 그것은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어야 된다 그렇게 권고하면서 임금에 관해서는 당사자 양쪽을 들어보니까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1개월 정도의 교섭기간을 갖고 타결을 위해서 노력하라 이렇게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름만에 노조에서 다시 신청했는데 당사자의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朴仁相委員**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설명하는 것에서 원칙문제는 저희들도 대충 감을 잡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행정지도가 노동계에서는 단체행동권을 봉쇄하는 그런 요인으로 너무 작용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법시행령 제24조2항에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 바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교섭을 다시 해라…… 지금 사실상 사용자가 교섭 거부하는 것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중노위에서 쳐다보면 안타까울 때도 있지요?

○**中央勞動委員長 林鍾律** 예, 많습니다.

○**朴仁相委員** 그래서 행정지도를 가지고 해결방법을 제시하겠다 이 부분은 자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中央勞動委員長 林鍾律** 저희들도 자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레미콘 노조의 경우입니다. 그 경우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안 했습니다. 한번도 교섭이 없었지만 사용자가 교섭에 응할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다. 이 경우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도 교섭이 될 것 같지 않았습다.

그래서 그 경우는 조정종료를 했고 그 결과 KAL의 경우에 노동계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경영계에서 중노위를 비난하는 성명을 낸 바가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했어야지 왜 조정종료를 했느냐 하고 비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엄정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朴仁相委員**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방금 최대한으로 행정지도를 자제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듣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中央勞動委員長 林鍾律**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容泰** 金樂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樂冀委員**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劉容泰 위원장님께서 장관님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소 중복이 됩니다마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동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생했는데 오늘 보니까 전부 잘 했고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다, 열심히 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뭄극복에 온 국민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노총의 예고된 파업, 이것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예방하지 못한 그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한테 적어도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그런 정도의 얘기는 있어야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했다고만 하는데 그게 정부의 책임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얘기입니까?

이것은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빛이 안 납니다. 정말 고개 수그러서 우리 국민들한테 이 파업에 대해서 정부가 사전에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예방하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있어야 정상이지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것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은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법의 엄정한 집행, 제도개선, 행정적인 최선의 노력 등 여러 가지를 해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주요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金樂冀委員**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 기본권 보호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11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58.4%라고 발표했는데 장관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알고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이런 발표가 한겨레신문에 실렸을 때 노동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노동부에서 이 발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樂冀委員** 예, 그러면 담당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고용총괄심의관입니다.

그 가판을 보고 저희들이 해명자료를 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金樂冀委員** 그 해명자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겨레신문에만 해명자료를 냈습니까, 각 언론사에 다 배포했습니까?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각 언론사에 다 냈습니다.

○**金樂冀委員** 그 내용이 뭐니까?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노동사회연구소에 여러 가지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중 장기임시근로자로 분류한 500만명의 경우에는 장기임시근로자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몇 가지 사유가 있으니까 혼동을 가져올 그런 것에 유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金樂冀委員** 그러면 지난해 노동부가 한국노동경제학회에 용역을 해서 비정규직 고용실태를 조사한 사실이 있지요?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예, 그렇습니다.

○**金樂冀委員** 그런데 지난 1월 비정규직 규모가 26.4%라는 노동경제학회의 발표가 한국일보에 보도된 것 알고 계십니까?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알고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그러면 노동경제학회에서 발표한 26.4%라는 것은 해명자료 안 냈습니까?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안 냈습니다.

○**金樂冀委員** 안 낸 이유가 뭐니까?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특별히 해명할 그런……

○**金樂冀委員** 26.4%가 정상적이기 때문에 안 냈다 그런 얘기입니까?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숫자들이……

비정규 근로자의 규모와 개념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노동경제학회, 노동연구원, 노동사회연구소 등 여러 기관에서 숫자를 발표해서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마는 이 숫자가 전부 작년 8월 통계청에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한 그 원 자료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비정규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비정규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비정규다 해서 각각 숫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노동부가 숫자를 적게 발표한 것은 별 문제가 없고 숫자가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해명자료를 낸 것입니다.

통계가 틀릴 때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이 있으면 똑같이 해명자료를 내주어야지 58.4%는 그것이 아니라고 일반화시킬 수 없다고 해명자료를 냈는데 그러면 26.4%는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金樂冀委員** 그렇지요?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예.

○**金樂冀委員** 이런 것 자체가 노동부가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숫자를 파악하는데도 혼선을 가져오고 있고 기본적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기본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숫자가 늘어나니까 국민들이 걱정하고 또 노동계가 반발하니까 이것 아니다 하고 결과적으로 해명자료를 낸 것 아닙니까? 규모축소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대로 밝혀야지 축소할 의도가 뭐 있습니까?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축소할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金樂冀委員** 그런데 왜 해명자료를 내요?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그 쪽 숫자가 통상적인 학자들이나 다른 나라에서 갖고 있는 기준과 너무나 동떨어진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에 유념해서 기사를 썼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金樂冀委員** 어떻든 이것은 정부로서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통계청에서 나오는 숫자를 비롯해서 50%, 51%, 58%, 26%, 그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특정 연구소에서 나온 것만 해명자료를 냈다, 그 숫자가 제일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노동부는 그렇지 않다고 해명하지만 축소할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과연 노동부가 그런 태도를 취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58.4%라는 숫자가 틀렸다고 해명자료를 낸 것이 아니고 한겨레신문에 나온 내용 중에 노동사회연구소에서는 그렇게 분석했지만 노동

경제학회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숫자가 마치 왜곡이나 축소한 것처럼 보이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을 해명한 것이지 노동사회연구소에서 낸 숫자가 틀렸다, 맞았다, 이런 해명자료는 아닙니다.

○**金樂冀委員** 본 위원도 노동사회연구소에서 나온 그 숫자가 전적으로 타당하다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인정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26.4%도 어느 연구소, 어느 기관에서 나왔든간에 그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지 굳이 노동사회연구소에서 나온 것만 노동부가 해명자료를 낸다는 것은 정부로서 취할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기임시근로자에 대한 문제제기는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동사회연구소 자료를 보면 장기임시근로자가 500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수 차례 갱신하거나 자동연장을 통해 장기임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2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는데 노동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근로기준법 제23조는 「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양해해 주신다면 근로기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勞動部勤勞基準局長 白日天** 근로기준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 23조에는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갱신된 근로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 위반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판례나 일반해석에서는 계약이 수차례 반복되는 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 그런 경우에 그것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나 해석에도 반복된 기간이나 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일적으로 정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앞으로 저희가 노사정위원회 특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논의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樂冀委員 그러면 노동부에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장기임시근로자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는지 어떤 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白日天 그래서 우선 기본통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부차관 주재로 경제계·학계·노동계가 전부 참여해서 실태조사방안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방법도 정하고 구체적인 질문항목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번 6월 중순에 우리 중앙고용정보원에서 직종별·산업별 고용조사를 합니다. 그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비조사를 하고 그 결과로 금년 8월에 통계청에서 조사할 때 정식으로 조사해서 기초통계를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0만명에 달하는 장기임시근로자 문제만이라도 해결한다면 우선 비정규직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시일용직 가운데 근속기간이 3년을 상회한 장기임시근로자 137만명이 상용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노동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白日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제기를 해서 작년에 경제부처 장관님들의 회의인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이 안을 내서 계약이 반복되어서 1년 이상 되었을 때 그 사람을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해 주어야 되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때 타 경제부처에서 경제계의 입장을 고려해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유보된 상태에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저희가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특위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를 정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특위가 구성되어 있지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白日天 예, 일단 설치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현재 인선 중에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구성은 안 되어 있고 설치하기로 합의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白日天 5월30일에 합의되어 있고 6월20일에서 말 사이에 구성될 예정입니다.

○金樂冀委員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군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白日天 예, 그렇습니다.

○金樂冀委員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부터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노동부가 적극 나서서 추진해야 할 민감한 사안들은 대부분 노사정위원회로 떠넘겨 버리고 노동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 지는데 노동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白日天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장관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계나 노동계의 의견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사가 의견을 같이 모아서 특위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金樂冀委員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호문제도 노동부가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 이것을 회피하고 노사정위원회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으로 보는데 노동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白日天 어차피 특위가 열리면 노동부가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반영되도록……

○金樂冀委員 그런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되었다고 해서 몇 개월에서 2년, 3년씩 끌면 평생 해결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비정규직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논의하는 것대로 놔두고 노동부가 노동기본권 보호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부가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본 위원에게 약속한 것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보호대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래서 노력하고 있는 증거는 나타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일인 비정규근로자의 단결권 실태조사 및 대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2월 국회에서 그 보호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구했으면 하고 있다는 중간보고라도 해주고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지 2월에 하

겠다고 해놓고 지금 6월인데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이제 6월에 와서 입수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국회의 권위를 그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완벽하게 수립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중간통보는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앞으로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樂冀委員** 이것은 엄청 잘못된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보호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얘기한 것이 도대체 몇 개월입니까? 4월에 임시회의가 열렸고 이번 6월에 열렸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중간통보라도 해주고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부가 국회를 우습게 보는 국회경시풍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겠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金樂冀委員** 노동부는 더 이상 이런 것을 노사정위원회에 넘기고 조사한다, 수립한다, 계획을 만든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기초조사가 되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권 보호대책을 수립해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容泰** 申溪輪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申溪輪委員** 한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아까 중점지도대상사업장 지도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원하는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43개소 중점지도대상사업장에 일종의 파견식으로 된 전담감독관 43명이 각 사업소에 한 명씩 파견되었나요?

담당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勞動部勞使協力官 鄭鍾秀** 노사협력관입니다.

규모가 큰 사업장은 두 명 있는 곳도 있고 적은 사업장은 한 명이 있는 곳도 있어서 43명은 넘습니다.

○**申溪輪委員** 몇 명입니까?

○**勞動部勞使協力官 鄭鍾秀** 그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申溪輪委員** 상황이 복잡해지면 두 명이 될 수

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대상사업장별 파견된 감독관의 이름을 적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勞動部勞使協力官 鄭鍾秀** 예.

○**申溪輪委員** 그래서 종료된 것은 언제 종료되었고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며칠부터 파견되었다는 것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가능하지요?

○**勞動部勞使協力官 鄭鍾秀** 예.

○**申溪輪委員** 다음에 일선 전담감독관이 사업장에서 나름대로 활동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활동하다가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요한 상황보고를 합니까?

○**勞動部勞使協力官 鄭鍾秀** 예, 동향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申溪輪委員** 잘 아시는 과장님 누가 계십니까? 같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내용을 잘 아시는 분께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중요한 활동보고는 되겠지요? 감독관이 파견되었으면 보고서를 써야 할 테니까 중요한 상황변화에 대한 것은 보고가 되겠지요?

○**勞動部勞使協力官 鄭鍾秀** 예.

○**申溪輪委員**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아닌 때라도 파견되었으면 일상활동에 대한 보고도 일일보고 형식으로 합니까? 일종의 전담감독관 나름대로의 일지일 수도 있겠고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일지 같은 것을 작성할 것 아닙니까?

○**勞動部勞使協力官 鄭鍾秀** 담당감독관이 자기가 관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지도한 내용은 나름대로 필요한 사항은 돌아와서 감독과장에게 보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申溪輪委員** 아니, 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법규정을 잘 모르겠는데 근로감독관이 나가면 어떤 상황을 기록하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의 일상활동에 대해서 기록한 기록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활동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나 하면 어떤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느 선에서 이 문제에 대한 활동보고가 이루어지고 중요한 판단의 공유,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장님께 보고되는 것은 어떤 상황일 때 보고됩니까? 전부 보고되지는 않을 것이고 이를테면 국

장이 요구하는 사항만 보고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勞動部勞使協力官 鄭鍾秀** 우선 조금 전에 아까 처음에 인사드린 것처럼 저는 발령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申溪輪委員** 그러니까 누가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능숙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되었고 과장님께서 같이 들으시고 같이 고민해 보시다.

이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가 많아서 어려울 것이니까 43개 사업장 중에서 아까 제가 43개 사업장별로 나가 있는 근로감독관 명단과 나간 일시, 종료된 일시, 계속 중이면 계속 중인 것을 표시해 달라고 했고 이 활동사항 중에서 서울청 산하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 세 군데의 활동에 대한 기록을 전부 주십시오.

중앙부서나 자기 소속청인 서울청에 보고한 내용이 있으면 지금부터 자료를 만들지 말고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활동한 내용이 비치되어 있으면 그 기록을 주십시오.

그리고 부산청 산하에서는 효성 창원공장에 대한 활동의 전 기록을 주십시오. 대전청에서는 충북대학교병원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원문 그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선감독관이 어떤 고민을 하고 무엇을 판단하려고 노력했으며 누구와 상의했고 어떤 결론을 얻었는지를 같이 점검해 보기 위한 것이니까 지금 자료를 만들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보고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원 자료 그대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실 수 있습니까?

○**勞動部勞使協力官 鄭鍾秀** 예,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劉容泰 위원장, 金樂冀 간사와 사회교대)

○**申溪輪委員** 상황보고는 아마 노동부 본부에 보고되지 않은 내용도 서울청에는 있을 것입니다. 역시 부산청에도 있을 수 있고 대전청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중요한 큰 사업장의 문제는 노동부에서 논의되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책임있게 논의되었는지를 제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떨 때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부서와 사람에 의해서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아주 높은 단위에서 고도의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단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각기 사업장마다 틀린 여러 가지 형태나 판단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것은 아주 높은 정치적 판단까지 포함하는 것이 요구되었고 어떤 것은 행정적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류와 분석을 잘했으며 판단을 잘했는지 여부를 서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실 수 있지요?

○**勞動部勞使協力官 鄭鍾秀** 예.

○**申溪輪委員**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에 전담감독관은 감독관이면서도 특별한 곳에 가는 것이니까 어떤 활동지침 같은 것이 있을 텐데 여기에 보니까 ‘지도원칙’이 아주 추상적입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분류발생 전에는 전담감독관을 배치, 동향과약 및 노사관계자 면담 지도를 통해 분류발생 예방에 노력하고 분류발생시는 특별기동반을 운영한다’ 그리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해서 분류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구체적인 원칙이 아닙니다.

내가 감독관이면 그 사업장에 내려가면서 어떤 지침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근로감독활동지침 중에서는 일반적인 활동지침도 있잖아요. 하지만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43개 중점사업장에 내려보내면서 이렇게 내려보냅니까?

○**勞動部勞使協力官 鄭鍾秀**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여러 가지 분류의 우려가 있다든지 하는 사업장을 선정해서 감독관이 늘 관심을 가지고 체크한다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감독관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임무라든지 원칙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申溪輪委員**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같으면 대한항공과는 전혀 판이한 노동운동의 역사가 있고 사람이 있고 소속이 있습니다. 물론 다 알 수도 있는 것 같지만 특수한 상황의 분류진행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파견될 때에는 이리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활동하고 이런 점이 발생했을 때는 보고하는 등 나름대로의

활동원칙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활동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지도원칙이라는 것도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이런 원칙이 있었는지 보시고 서울청이나 각 청에 어떤 특정한 사업장에 보낼 때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지 확인해서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勞使協力官 鄭鍾秀** 예, 알겠습니다.

○**申溪輪委員** 그렇게 해주시고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勞動部勞使協力官 鄭鍾秀** 2주 가량 됩니다.

○**申溪輪委員** 열심히 하셔서 업무를 빨리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樂冀** 申溪輪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全在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在姬委員** 우선 국가기술자격증 종목신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용업도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미용업소나 종사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으나 국가인증자격증이 없고 미용사 자격으로 개업하거나 일반사업허가로 등록하거나 무허가 업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용사자격증을 가지고 과연 피부미용사로 활동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시험과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미용사 자격시험 이론시험은 공중보건학, 공중위생법규, 미용이론, 소독학, 피부학 등의 과목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60개 문항 중에 5개 문항만 피부미용 관련 이론시험 문항입니다. 그리고 실기시험은 머리를 손질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깎고 퍼머하고 이른바 헤어드라이 같은 것으로 실기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피부미용업소를 개설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업소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민간피부미용사 자격시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험과목을 한 번 보면 대뇌생리, 메이크업, 향장, 인체생리, 비만, 피부과학, 피부미용관리, 해부, 발관리, 소독, 위생, 영양, 과학, 물리, 법규, 상

담, 경영 등으로 전문능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미용사자격증으로 피부미용사를 한다는 것이 전문성이나 세분화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용사와 피부미용사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활동 및 업무범위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사용재료나 기구들이 서로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예컨대 여자들이 미장원에 가서 퍼머먼트를 할 때 그 약이 강한 알칼리성 내지 강한 산성약품을 씁니다. 그러나 피부에는 화학성분이 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혀 다른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피부미용사라고 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고 또 허가는 미용사자격을 가져야만 내주다 보니까 현재 어떠냐 하면 2000년 미용사협회 자료에 의하면 피부미용업소가 14만2,954개소입니다. 거의 15만개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중에 82.85%에 해당하는 11만8,438개소는 무허가 영업중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은 전혀 소비자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또 중요한 기술자격분야의 인력을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실정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야에 종사하는 피부미용사도 한 업소당 1명 내지 2명 있다고 추정하더라도 약 30만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미용사자격으로 아주 일부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민간 피부미용사자격이나 아니면 무허가로 하고 있는 상태를 국가가 방치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피부미용업소와 피부미용사는 생겨나고 있습니다. 연간 피부미용사의 배출인원을 살펴보니 매년 12만1,150명이 배출됩니다.

지금 60개의 전문대학에서 피부미용 관련학과를 개설했습니다. 60개 대학입니다. 그리고 노동부가 직접 설치하다가 지금 여성부로 이관한 '일하는 여성의 집'을 비롯해 노동부에서 인가해 준 춘천 직업전문학교 등 전문직업훈련기관에서도 33개소가 피부미용 관련학과를 개설해서 교육훈련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격증은 안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니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99년11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해서 피부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종목개발 운영방안을 용역한 결과 이것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동부에 자격신설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는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
를 하니 이 부분은 이해관계 집단간의 대립이 있
다고 해서 종목신설을 계속 미루어 오고 있는 실
정입니다.

60개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개설해서 교육을 시
키고 노동부가 인가하고 노동부가 설치운영 중인
시설 33개소에서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고 1년에
12만명 이상이 지금 배출되고 있고 또 업소가 별
써 15만개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도 이것을 무허가
로 방치한다는 것은 국가가 너무나 책임을 방기하
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실무국장이 저에게 와서 보건복지부하고
상당히 협의가 진전되었고 곧 원만히 협의가 끝나
서 조속히 종목을 신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
니다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럼에도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제기하는 것은 국가는 이해관
계자의 대립이 있더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필요
성에 따라서 정당성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선 미용업소에 다니면서 별도 자
격증을 두는 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일선 미용업소
에서는 대개 혼자 하시는 분들은 머리만 하시기도
바빠하기 때문에 피부미용을 하실 수가 없고 조금
큰 미용업소에서 피부미용사를 별도로 고용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별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반대의견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다만 미용협회에서 그동안 함께 회원으로 있던
분들이 분리되어 나간다는 데 대해서는 가능하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전문성
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 호주, 독
일, 프랑스, 이탈리아 다 피부미용사 자격증을 갖
고 있습니다. 일본만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
는 거기에서 더 분리되어서 메이크업자격까지 갖
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또
하나의 전문기술직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
결할 의지를 갖고 계신지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
니다. 전문화추세에 맞추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全在姬委員** 적어도 정기국회 전에는 해결해 주
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
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全在姬委員**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아까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남발에 대해서는 존경
하는 朴仁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보충질의
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언급을 않겠습니
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문제를 제가 단적인 예를 들
어서 한 번 장관님하고 고민을 해 보고자 합니다.
광주지방노동청에서 대우캐리어를 조사하셨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全在姬委員** 6개 하청근로자 570명을 실질적으
로 불법파견근로자로 사용해 와서 사용자를 고발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불법파견업체도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으면 노동부는 모르고 있
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장관님, 이 시점 현재 우리 나라에 불법파견업체
가 몇 곳이 있고 몇 명의 근로자를 보내고 있습니
까? 장관님께서 우선 조사하신 자료가 있으면 답
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현재는 자료가 없습니다.

○**全在姬委員** 대우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96년부
터 이루어진 일이 최근에 조사된 것입니다. 96년부
터면 물경 5년을 해온 것입니다. 5년 동안 이것이
조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나라에 얼마
나 많은 불법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는 미
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별도의 실
태조사에 임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태조사를 해주
시겠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수를 조사하
기는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全在姬委員** 그러나 불법파견업체를 운영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엄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있음
으로 해서 불법파견업체의 확산을 막을 수가 있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활동을 해
주실 수 있겠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全在姬委員** 그리고 실태조사를 해서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99년10월 노동부에
서는 자계식으로 근로자파견대가의 구성내역을 파
견사업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에 보면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전체 파견대가 중에
임금이 68.6%를 차지하고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전

체 파견대가 중에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38% 내지 31.4%는 파견업체가 영업이익이라든지 다른 수수료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파견업체는 상용형이 아니고 직업소개소와 다름이 없는 등록형입니다.

직업소개소는 3개월 단위로 10%의 수수료를 받는데 지금 개인기업의 영업이익이 물경 19.5%이고 법인기업은 1%입니다. 그렇다면 파견업체가 파견대가의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영업이익으로 남기거나 다른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규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것은 여기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무엇합니다마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全在姬委員** 그래서 저는 99년에 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이것을 조사해서 직업소개소의 수수료도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주는 것처럼 등록형으로 해서 직업소개소와 다름없는, 파견업체가 지나치게 많은 영업이익을 남겨서 임금을 중간착취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그 문제를 조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문제는 우리 나라의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은 월급을 적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꾸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해고의 자유 때문에 선호한다면 그것은 노동의 유연성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임금차별 때문에 더 많이 선호된다고 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동관계법이 근로기준법이 될지 다른 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고용형태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 동일노동을 함에도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全在姬委員** 그래서 저는 그런 법개정을 정부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산업안전의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문제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선 산업안전처벌이 너무나 솜방망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99년과 2000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사용자처벌현황을 보면 99년의 경우 5만5,405명이 재

해를 입고 2,29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3,406개 사업장에 5,702건의 사법처리를 했는데 검찰에서 6개 사업장 7명만 구속되었습니다. 장관님, 2,0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노동부에서 5,000건이 넘게 사법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6개 사업장 7명이 구속되었습니다.

2000년의 경우에도 6만8,974명이 재해를 입고 2,528명이 사망해서 노동부에서는 4,391개 사업장에 8,124명을 사법처리 하도록 했으나 구속은 5개 사업장 10명에 불과합니다.

장관님, 사람이 죽어도 사업주가 구속되면 다른 근로자가 생계의 곤란을 받는다는 이유로 인명을 이렇게 가볍게 다루어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반자 대비 구속자 수를 보니까 99년도는 0.00122%, 2000년도는 0.00123%입니다. 이렇고도 우리가 앞으로 사업주에게 산업안전을 철저히 하라고 얘기한다고 그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강화되어야 됩니다.

또 노동부는 사망재해대책을 만들어서 사망재해 3건이면…… 노동부가 의지를 밝혔는데 그리고 나서 대우조선에서 4월 말에 3건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대표이사 구속지휘를 이례적으로 검찰에 공식요청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대표이사가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중지하고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사업주가 근로자가 죽고 다치는데 대해서 무슨 걱정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관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우선은, 아까 제가 노동부가 산재와 관련해서 구속요청을 했는데 검찰이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것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분석하시고 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만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업무협조를 하셔서 이렇게 안 하도록 고쳐주시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두 번째 할 일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로자 측에서는 걱정하는 재해자문제와 산업안전보건법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해서 중대과실을 초래하거나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유발된 산재사고에 대한 원인제공자의 처벌을 위한 산재사고처리에 관한특별재해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노동부가 나중에 서면으로 저에게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산업안전규정의 완화, 현장감시 인력부족문제, 작년 예산편성하실 때 자활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 과다계상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주장했는데 노동부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해 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과다편성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자활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樂冀 全在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樂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金文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文洙委員 장관님, 민노총이 당분간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 같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그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면 다른 대화통로를 마련해야 되겠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실무협의회를 거의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투쟁기간에는 투쟁전략상 자기네들이 안 만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금 안됐습시다라는 실무협의회를 하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실무협의회나 비공식적인 접촉결과를 기록한 문건이 있겠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것을 전부 제출해 주세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金文洙委員 다음에 지금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이 수배되어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민주노총 간부 중에 수배자들의 이름과 직책,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勞動部長官 金浩鎭 이홍우 사무총장, 신현훈 대외협력실장, 한혁 서울본부조직부장, 여성오 서울본부조직차장, 유봉식 광주·전남본부조직부장입니다.

○金文洙委員 신언직 조직쟁의실장은 이미 연행됐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金文洙委員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구속되었지요.

○金文洙委員 민주노총의 구속자와 수배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위원장부터 수배해 놓으면 당분간 대화는 안 되겠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당분간 대화는 안 되겠지요.

○金文洙委員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노동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분명히 불법을 했다고 하면 수배도 하고 구속도 해야 되겠고 또 대화를 안 하면 상태가 더 악화되고,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당히 딜레마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연락을 받았습시다라는 이 회의가 끝나면 가서 사실을 정확히 확인해 보고…… 어떻게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로가 법을 지켜서 이런 사태가 안 왔어야 되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원칙에 따라 잘 해결되어서 노사관계가 더욱 더 협력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저하고 그런 좋은 말씀은 더 하실 필요 없고, 거기까지는 서로 같은 생각이니까요.

수배조치는 검찰에서 내렸겠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렇습니다.

○金文洙委員 수배조치를 내릴 때 공안대책협의회에 노동부에서 누가 참여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오늘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金文洙委員 노동부장관님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런 것은 없습니다.

○金文洙委員 노동부 누구한테도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없습니다.

○金文洙委員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노동부는 어떠한, 평상시 구조조정할 때는 사실상 기획예산처나 경제부총리나 경제부처가 주도를 하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렇습니다.

○金文洙委員 노동부는 그냥 멍하게 있고 그 다음 분류가 일어나면 공안대책협의회나 검찰이나 경찰에서 장관한테 통보도 없고 오늘 수배를 하는지 내일 구속을 하는지 노동부는 멍하게 쳐다보고 그러니 평상시에는 경제부처에 밀려서 가만히 쳐

다보고 있고 분류가 터지면 공안기관한테 밀려서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노동부는 뭘 하는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복잡한 것은 노사정위원회 쳐다보고 앉아 있고……

언제부터 노동부 신세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가장 책임 있는 주무부처로서 노동부가 이렇게 된 데는 장관님의 무능이 대단히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직제라고 할까, 정부편제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金文洙委員** 과거에도 장관들이 많았습니다. 과거에도 이 시스템을 갖고 했습니다. 물론 노사정위원회가 생긴 것은 이 정부 들어와서 생겼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아무리 그래도 노동부장관이 적어도 가장 문제 있는 민주노총의 위원장, 사무총장 이하 대외협력실장 등등…… 완전히 조직전체를 수배하고 구속하는 상태까지 와서 소위 말하는 극단적인 대결상태로 가는 것 아닙니까? 대화가 불능할 상태까지 갈 때 주무장관이 협의는 고사하고 통보도 못 받는다면 과연 이 극단적인 대립적 노사관계의 진전과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국민이 생각하겠느냐, 그 점에서 참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부가 이런 정도로 무시당하고 역할이 없다면 장관께서 과감하게 장관직을 사퇴할 각오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를 만날 때도 무슨 책임과 권한이 있어야 정부대표 부처의 장관으로서 승이 서고 책임 있는 약속을 할 수 있지요. 아무 것도 못하고 나는 모르고 보니까 당신들 다 수배되어 있다, 잘 도망이나 가든지 잡히든지 해라, 그래 가지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태로 계속 노동부를 끌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퇴하시겠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방향으로 노사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이 문제해결의 첫째 전제조건이고 두 번째는 경찰이라든가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노사가 서로 대화로 문제를 푸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대화와 엄격한 법의 집행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대화만 있어서도 안 되지만

또 엄격한 법만 있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노사관계는 그야말로 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대단히 인간적인 면, 복잡하지만 거기에 전문적인 여러 측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럴 때 제가 대화하지 말라, 법을 집행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주무장관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가 그냥 계속 취해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장관이 왜 필요하나, 저는 그런 점에서 장관님 휘하에 있는 노동부 공무원들도 굉장한 자괴감을 느낄 것으로 봅니다. 저 자신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앉아 있지만 이 위원회에 앉아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도 역시 노동부는 별 볼 일 없고 환경노동위원들조차도 상당히 볼 일 없는 사람 비슷하게 앉아 있게 됩니다.

장관님께서 자기 역할을 확실히 하시고 부처내에서 자기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고 책임 있게 일을 하실 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도 동시에 보람을 느끼고 의미가 있는 회의를 하지만 아무리 물어도 모르고 조치 내려진 것이 어제 내려졌는지 오늘 내려졌는지 나는 알지도 모르고 경찰청에서 내렸는데 경찰청장으로부터 통보도 못 받고 협의도 못 받고…… 이런 부처 장관 모시고 하루종일 허비하는 저 자신이 허망하기도 하고 한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유감입니다.

그 다음 노동부 노정국 노사협의과내에 신노사문화추진단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金文洙委員** 단장이 지금 임명되어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지금은 단장이 없습니다.

○**金文洙委員** 추진단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安鍾根** 작년까지 신노사문화추진단이 임시직제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직제개정을 통해서 노사협의과에서 같이 맡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金文洙委員** 같이 맡는데 그 추진단은 있기는 있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安鍾根** 없습니다.

○**金文洙委員** 그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安鍾根** 예, 없어졌습니다.

○**金文洙委員** 이상용 장관 때 만들었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安鍾根** 그렇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래서 당시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 달라고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억 이상 예산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하셨는데 결국 단장도 임명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버렸지요?

○**勞働部勞政局長 安鍾根** 추진단장은 계속 있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면 최근에 흐지부지되면서 없어졌다는 것입니까?

○**勞働部勞政局長 安鍾根** 있다가 이번에 실업대책도 급하고 그러니까 조직을 바꾸면서 실업대책 쪽에 사람도 넣고 해야 되니까 인력사정도 있고 하니까 노사협의과로 같이 합쳤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면 이제 신노사문화는 일상적인 업무지 특별히 이 부분을 가지고 추진할 일은 없다는 것이지요?

○**勞働部勞政局長 安鍾根** 종전에 하던 그런 사업들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계속사업이지 특별한 강조점을 두고 추진할 것은 없다고 판단했다……

○**勞働部勞政局長 安鍾根** 강조점은 역시 계속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文洙委員** 직제라는 것이 어떤 의지를 말한다고 할 때 일단 있던 예산을 없애고 직제를 없앨 때는 의지가 상당히 약화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勞働部勞政局長 安鍾根** 꼭 그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렇게 안 봐도 됩니까?

○**勞働部勞政局長 安鍾根** 예.

○**金文洙委員** 그러면 노동부도 없애고 노동행정의 의지는 강하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勞働部勞政局長 安鍾根** 일단 노사협의과에 업무를 담당하는……

○**金文洙委員** 아니, 정부부처내 어디다가, 경찰청에서 노사문제를 담당하면 되지 노동부를 둘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말장난은 하지 말자고요.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해야지……

○**勞働部長官 金浩鎭**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신노사문화라는 것은 협력적 상생의 노사관계를 관행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착시키자는 것인데 명칭이 신노사문화냐 아니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이 작업이 한두 해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정

부 들어서도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강조되어야 된다, 앞으로 예산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신노사문화추진단이라는 기구를 별도로 해서 하기 보다는, 초기단계에서는 그것이 필요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상당히 착실하게 진척되어 가는 것이니까 노사협의과 직원들이 좀더 고생스럽지만 노사협의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기능을 그쪽으로 흡수했습니다.

○**金文洙委員** 장관님 말씀 들으니까 교묘한 궤변 같아서 유감입니다. 저는 신노사문화는 정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그것을 누가 어떻게 일관되게 어떤 방향으로 누구와 더불어 추진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신노사문화 추진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늘 지적했던 점은 그것이 전시성, 일과성 행정의 한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하자, 강당에 모아 놓고 무슨 행사하고 이런 차원에서 될 문제가 아니다……

신노사문화를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민주노총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노총은 지금 큰 문제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일어나는 데 대해서 핵심적이고 집중적인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신노사문화라고 하면 모아 놓고 파티나 하고 행사나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지적했던 것입니다.

노사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한국경제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수배되고 구속되는 것 자체가 복지와는 거리가 머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여야를 넘어서서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노동부가 정말로 사태를 정확하게 보고 노동부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훌륭한 인력들을 잘 활용하고 지휘해야 되는데 도대체 장관님으로 오시는 분마다 어떻게 된 셈인지 관심도 없고 책임도 없고, 이것이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모르고, 국회에서도 질의하면 계속 동문서답이나 하고 있어서 저는 걱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자활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활인턴제예산이 300억 있었는데 그 중 250억을 정부지원인턴사업으로 전용했지요?

○**勞働部長官 金浩鎭** 실무자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金文洙委員** 답변해 보세요.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容達** 예, 그렇습니다.

○**金文洙委員** 아까 全在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할 때 ‘아무리 봐도 자활사업이 안 된다’ 하고 저도 지적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잘 될 것입니다, 돈만 주십시오.’ 했는데 돈 갖다가 250억 전용한 것이 원래 예산편성할 때의 노동부 답변과 같은 거예요? 사정이 달라졌습니까? 그때 우리가 지적했던 것과 무엇이 달라졌어요?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容達** 이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해서……

○**金文洙委員** 잠깐만요. 국장이시지요?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容達** 고용정책실장입니다.

○**金文洙委員** 실장님은 바뀌어서 잘 모르겠지요?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容達**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金文洙委員** 예산편성할 때하고 바뀌셨지요?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容達** 그렇습니다.

○**金文洙委員** 그 담당국장님도 바뀌셨지요?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과장, 국장 다 바뀌었습니다.

○**金文洙委員** 장관님, 이렇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것을 이야기를 해보면 실무자들부터 위에까지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좀 마련해 주십시오’ 해서 마련해 놓았는데 예산 300억 중에 250억 빼다가 다른 데 썼고 형식적으로 50억이 있는데 그것도 4월 말까지 4,800만원밖에 집행은 못했어요.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돈은 끌어다가 전용하고, 따지면 ‘담당자들이 다 바뀌어서 모르겠습니다.’ 장관은 ‘업무과약을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이 과정을 세세하고 차분하게 바라보고 있다면 참 답답할 것입니다. 이 나라에 희망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정말 중요한 부서다, 노동부가 비주요 부서가 아니고 중요한 부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만큼 정말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 오늘 하던 말 내일 번복하고, 오늘 만들었던 것 내일 헐어버리고, 오늘 예산 따다가 내일 다른 데 써버리고, 적당하게 해서 지나가면 되고,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만 듣고 쳐다보고 왔다갔다 하다가 아무것도 되는 것은 없고 깨지고, 경찰한테 능멸 당하고, 검찰한테 조인트 까이고, 경제부처한테 밀리고…… 뭐냐 이것입니다. 정말

자존심 상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상태를 언제까지 가져갈 것입니까? 왜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합니까? 노사관계 하루이틀입니까, 실업문제 하루이틀입니까? 저는 사실 보좌관 몇 명밖에 없는데 제가 지적할 정도로 눈에 보이는 것을 왜 장관님이 못 보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느냐 이것입니다. 그 많은 노동부 직원들 뭐합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자활사업문제는 정곡을 찌르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많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50억은 전용 자체가 좋으나 나쁘냐는 다른 문제이고 대학생, 청소년실업자문제에 썼기 때문에 용도는 참 바람직하게 썼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 250억 쓴 내용을 내주세요.

다음에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보니까 산업안전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金文洙委員** 제가 볼 때는 점검해 봐야 될 점이 많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여기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의 장관님 이하 여러 간부들께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셔서 노사관계, 노동현안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소신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어떤 부처보다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자, 이것이 절대로 공안문제로 가서 경찰이나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또 경제부처에 의해 떠밀려서 항상 자기 뜻을 펴지 못하는 부처로 전락하지 않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在姬委員**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산업안전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과 통합하는 것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기금을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도 산업안전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과 통합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만을 뿐이고 산업안전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위원장께서 합의하셔서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전원의 의결로 이 기금통합에 반대하는 의결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申溪輪委員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미 金文洙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상의할 수 있고, 金樂冀 간사와 같이 검토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를 충분히 해보시고 며칠 내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樂冀 金文洙 위원께서 요청하신 노동부의 견해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文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晟祚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晟祚委員 아까 본질의 때 장관께서는, 효성에 가서서 또 노동부 직원이 공권력 투입은 없다고 말했지 않느냐는 제 질의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제가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공권력을 개입시켜야 된다 안해야 된다 그런 단정적인 말은 안하거든요.

○金晟祚委員 장관께서는 경총이 효성에게 ‘이면 합의 불가’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알고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경총이 효성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사실 불법행위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불법까지는 아닙니다.

○金晟祚委員 그렇지만 제3자 개입금지원칙 정신에 어긋난다 정도까지는 얘기가 되겠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할 수는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그리고 金武星 위원께서는 불법 노조행위가 있을 때는 공권력 개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좌우간 필요하면 요청해서 개입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金晟祚委員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셨는데, 사용자측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면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것이 먹혀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지금까지 공권력이 근로자측에 강하게 계속해서 작용하고 사용자측에는 비교적 적게 해왔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왔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6월1일 공장방문 시에, “사용자가 교섭에 나서지 않는데 무슨 명분으로 공권력을 투입하

겠는가”라고 말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권력 투입문제는 말을 굉장히 절제하고 조심합니다.

○金晟祚委員 李忠馥 과장님! 효성 가셨지요?

○勞動部勞使協力官室勞使調整擔當官 李忠馥 노사 조정담당관 李忠馥입니다.

예, 갔습니다.

○金晟祚委員 현장방문하셔서 “교섭 중에는 공권력 투입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勞動部勞使協力官室勞使調整擔當官 李忠馥 그런 얘기를 한 것이 분명한데 그 의도는, 제가 본부의 장관님 지시를 받고 교섭을 주도했기 때문에 노사 교섭하는 도중에 공권력 투입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성실히 교섭해서 대화로 이 사태해결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제가 보건대 6월4일 과장님께서 “공권력 투입이 없을 것이다.”라고 한 것은 장관 이하 노동부 전체의 의견으로 노동자들은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勞動部勞使協力官室勞使調整擔當官 李忠馥 저는 5월28일 저녁에 내려가서 29일부터 6월1일까지 지도를 했습니다. 6월4일 얘기는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6월4일은 공권력 투입 바로 직전에 제가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또 한 차례 내려가서…… 거기에 가족들과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공권력이 들어온다는 것은 거기 화학섬유 연맹위원장도 노조도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교섭이 아니라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가족들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일만 가서 했습니다.

○金晟祚委員 거기에서 공권력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勞動部勞使協力官室勞使調整擔當官 李忠馥 그렇습니다. 6월4일은 교섭하러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金晟祚委員 저도 이런 기록을 화학노련에 확인한 것입니다. 어느 쪽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밝혀지겠지만 정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근로자들이 노동부를 신뢰하는 것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울산·여천 갔다오니까 사용자 쪽에서는 장관이 와서 노조요구를 들어주라고 얘기했다는 식으로 뒷얘기가 돌리고 그래서 참 곤혹스럽습니다. 장관이 거기 가서 엄정한 말을 하지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쪽으로 치우친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

니다.

○**金晟祚委員** 지금도 金武星 위원과 金晟祚 두 위원이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각각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제 말은 이런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장관님이 사용자 측에서는 노동자 편을 들었다, 노동자 측에서는 사용자 편을 들었다 양쪽 다 불신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불신이라기 보다는 각각의 입장이 다르니까 해석이 다른 것이지요.

○**金晟祚委員** 그럴수록 명확하게 노동부의 입장을 밝혀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노총의 연대과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본질의에서 하다가 남은 질의를 하는데, 레미콘노조과업 알고 계시지요? 레미콘조합에서 단체협상에 임하지 말자고 했는데 두 업체가 협상에 임하니까 레미콘협회에서 다시 시멘트협회에 이야기해서 협상에 임한 두 업체에게는 원료를 공급해 주지말라고 압력을 넣고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들은 적이 없습니까? 혹시 담당국장님도 들은 적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金晟祚委員** 며칠 후에 증인 채택해서 이야기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공문을 구할 수 있는지 노동부장관께서는 꼭 그 공문을 구하고 만약 이것이 불법행위라면 고발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상에 임한 업체, 그러니까 시멘트 공급받는 것을 방해받는 업체의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통화한 것이 녹취된 녹취록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여기에 보면, 광명레미콘사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레미콘협회에서 시멘트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각 시멘트회사에 공문을 다시 보냈다 그래서 그 회사로부터 못 구해서 대리점을 통해서 구하고 대리점을 통해서 구하다보니까 지출이 1일 몇 백만원씩 더 추가 지출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金樂冀 간사, 劉容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삼보산업이란 곳도 협상에 임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도’, 동양시멘트 회사인 것 같아요. ‘삼보산업, 광명에 주지 말라고…… 하루 딱 100t 주고 안 주어버리더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필요하다면 제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다음에 레미콘 사장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놓았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金晟祚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나 추가질의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현황보고를 이상으로 모두 마칠까 생각합니다.

앞서서 朴赫圭 위원, 朴仁相 위원, 崔明憲 위원, 朴洋洙 위원, 金武星 위원, 全在姬 위원의 서면질의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6월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동부장관을 포함한 간부 직원 여러분!

오늘 오전 일찍부터 당 위원회에 나와서 답변하시고 또 답변을 지원해 주신 여러 직원들께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出席委員(14인)**

| | | | |
|-----|-----|-----|-----|
| 金樂冀 | 金武星 | 金文洙 | 金晟祚 |
| 朴洋洙 | 朴仁相 | 朴赫圭 | 申溪輪 |
| 吳世勳 | 劉容泰 | 李浩雄 | 全在姬 |
| 崔明憲 | 洪思德 | | |

○**請暇委員(2인)**

金元吉 鄭宇澤

○**出席專門委員**

| | |
|--------|-----|
| 수석전문위원 | 姜長錫 |
| 전문위원 | 李昌熙 |

○**政府側參席者**

| | | | |
|----------|-----|--|--|
| 노동부 | | | |
| 장관 | 金浩鎭 | | |
| 기획관리실장 | 金元培 | | |
| 고용정책실장 | 金容達 | | |
| 노동국장 | 安鍾根 | | |
| 근로기준국장 | 白日天 | | |
| 산업안전국장 | 宋智泰 | | |
| 근로여성정책국장 | 申洛 | | |
| 고용총괄심의관 | 盧民基 | | |
| 능력개발심의관 | 朴鎔雄 | | |
| 노사협력관 | 鄭鍾秀 | | |

| | | | |
|-------------------|---|---|---|
| 국제협력관 | 崔 | 炳 | 勳 |
| 노사협력관실 노사조정담당관 | 李 | 忠 | 馥 |

○其他參席者

| | | | |
|--------------------|---|---|---|
| 중앙노동위원장 | 林 | 鍾 | 律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 金 | 在 | 英 |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具 | 天 | 書 |
|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 文 | 亨 | 男 |
| 한국장애인고용촉진 공단이사장 | 孫 | 京 | 鎬 |